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특별기고 - 살아있는 역사: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좌담회 :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이슈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한글서체
한글서체

생협평론 2012 여름 (7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2년 6월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전 화	02) 2060-1373 / 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2 여름 (7호)

길잡이

탐욕이 아닌 필요에서 출발하는 협동조합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 (㈜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7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24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39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2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3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76
특별기고 - 살아있는 역사: 50년 전, 영국 북서부 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로저 리차드슨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90
Special Column -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R.C.RICHARDSON	102
좌담회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역, 조성돈, 김아영	112

이슈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122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3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4
돌발논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송명훈 (리셋 KBS뉴스 기자)	145
서평 『자본주의, 그 이후』	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154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59
생협평론 과월호 인덱스		164

탐욕이 아닌 필요에서 출발하는 협동조합

엄찬희 (편집위원장)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그로 인한 사회 분열의 문제들은 비단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 간이라는 모든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2012년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2009년 유엔 총회에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자고 결의한 배경에는 협동조합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그간의 기여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했고, 특정 분야에서 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왔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세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존재 의의를 두고 있는 유엔이, 빈곤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협동조합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도 있지만 더 이상은 늦춰서는 안 될 의지 표명이었다.

“전 세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탐욕을 지양하고 인간적 필요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 적절하다.” 아마도 이것이 유엔이 열심히 협동조합을 세계에 알려서,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좋은 운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려 노력하는 문제의식일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힌다. 어떤 이들은 문제를 외면하고 수동적으로 사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길을 택한다. 바로 그러한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있었으니,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해온 협동조합들이다.

탐욕이 아닌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온 다양한 협동조합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 누구라도 다양한 필요들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와 협동하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구상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마침내 이 사회에는 다종다기한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우리들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생협평론> 7호가 기획되었다. 전형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장종익은 생산자협동조합, 김성오는 노동자협동조합, 김창진은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그리고 김신양이 사회적협동조합, 기노채가 주택협동조합에 대해 그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 특징, 그리고 한국 상황에서의 평가, 전망 혹은 제안이라는 틀로 접근하여 참신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로 만들어주셨다. 좌담회에는 이른바 주류 협동조합들 외에 새롭게 생기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에 대한 소개가 잘 담겨있다.

이번 호에는 특별한 기고가 포함되었는데, 협동조합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원로 역사학자 로저 리처드슨이, 어려서 경험했던 생협 매장의 단기 근무에 대해 생생하게 다듬은 에세이를 보내주셨다. 감사드린다.

협동조합을 몇몇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우리들의 리그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의 일환으로 역할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 바로 이번 호 <생협평론>이다. 

협동조합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특별기고

- 살아있는 역사: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좌담회 :

-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 (주)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I. 문제의 제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택은 가전, 가구, 식품 또는 의류처럼 명백히 시장에서 매매되는 일종의 상품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도 다른 상품들처럼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주택이라는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가격이 잠재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로 주택은 음식, 의류와 더불어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대체재가 별로 없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심각한 가격폭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고 농업과 공업의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총소득에서 음식과 의류에 관련된 비용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온 것에 반해, 주택가격과 주거비 관련 비용은 경제성장률 및 소득상승률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주택이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두 번째로 주택은 토지에 고착된 상품으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토지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후장대 상품이라 공급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다른 상품들처럼 공급부족 시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없어, 신속한 공급이 불가능하여 심각한 가격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투기세력이 가세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세 번째로 주택은 제조원가나 제품의 사용가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처럼 극히 일부의 거래가격이 재고주택 및 신규주택 전체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인근

지역 주택소유자의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투기자금까지 가세해 주택시세 전반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 상품과는 매우 다른 특징으로 인해 주택상품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겼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의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격폭등이 발생하게 되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박탈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주택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 개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한다. 즉, 많은 선진국가는 주택가격의 심한 변동성(주로 가격상승)을 낮추기 위해 주택의 공급과 수요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하는 동시에, 주거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하여 상류층까지 계층별로 세분화된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운동은 이러한 주택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소비자운동으로, 서구에서는 근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거문제의 악화와 2차전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도시의 심각한 주택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본 글은 우선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두 번째로 서구의 주택협동조합의 발전과정을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을 사례로 파악한 후, 세 번째로 우리나라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II.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1. 주택협동조합의 정의

주택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기본적으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체를 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택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택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자율적 단체”로

정의 될 수 있으며, ICA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7대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주택협동조합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 두 가지 유형은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주택협동조합이 주택의 개발과 건설이라는 공급과정에서만 그 역할을 하고,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 받은 이후 주택조합은 소멸되거나, 또는 주택조합은 계속 유지되지만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협동조합이다. 이와 같이 상호부조 형태의 주택협동조합을 주택건축협동조합 또는 주택시행협동조합이라고도 한다. 물론 분양받은 주택의 최종 소유권은 조합이 아니라 분양 받은 개인에게 있다.

주택건축협동조합은 주택공급계획, 개발시행에 조합이 직접 참여하여 조합원에게 경제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다시 말해 조합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합의 주요 목적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의 무리(Murri) 협동조합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회사나 시행회사가 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무리협동조합은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자체인력으로 설계 및 건설관리를 직접 수행하며, 지역 내에 있는 볼로냐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축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기 때문에 만족도와 인기도가 매우 높아 2010년 현재 가입된 조합원이 2만 3천 명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건설과정뿐 만 아니라 주택 입주 이후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 과정까지 확장하여 그 역할을 하면서 유지되는 주택협동조합으로, 이 경우 주택의 소유권은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협동조합에 있고, 개인은 단지 협동조합의 지분만을 보유한다. 이와 같은 주택협동조합을 주택관리협동조합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주택관리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분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

고, 조합원에게 필요 운영경비를 받아 유지되는 비영리 법인체'를 의미하며 미국과 유럽의 많은 주택협동조합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이러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주택협동조합의 종류

주택협동조합은 <표 1>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조합결성 단계, 자본조달 및 관리방법, 사용자특성 및 주택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표 1> 주택협동조합의 분류(예시)

분류기준	종류
건축단계	주택건축협동조합(Development and Building Cooperatives)
	주택관리협동조합(Building Management Cooperatives)
자본조달 및 관리방법	시장가격주택협동조합(Market rate or Equity Cooperatives)
	제한자산주택협동조합(Limited Equity Cooperatives)
	임대주택협동조합(Leasehold Cooperatives)
사용자특성	학생주택협동조합(Student Housing Cooperatives)
	노인주택협동조합(Senior Housing Cooperatives)
	지역주택협동조합(Community Housing Cooperatives)
	단기주택협동조합 (Short Life Housing Cooperatives)
	임차인관리협동조합(Tenant Management Cooperatives)
주택유형	단독주택협동조합(Single-family Detached Housing Cooperatives)
	공동주택협동조합(Communal Housing Cooperatives)
	녹색주택협동조합(Green Housing Cooperatives)

이중 자본조달 및 관리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의 종류인 시장가격주택협동조합(MEC), 제한자산주택협동조합(LEC) 및 임대주택협동조합(LC)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가격주택협동조합(Market rate or Equity Cooperatives)

시장가격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조합원이 거주하는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조합원은 배타적 주거공간에 해당하는 조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이후 주택의 지분매각 시 이를 시장가격에 매각하여, 자본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제한자산주택협동조합(Limited Equity Cooperatives)

제한자산주택협동조합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토지를 장기저가로 대여받거나 또는 직접적인 건설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 설립하는데, 매각 시 협동조합주택의 최고거래가격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협동조합주택의 장점을 유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가치를 유지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 조합원이 주택지분을 매각할 때 판매기준가격은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가격(일반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협동조합(Leasehold Cooperatives)

임대주택협동조합은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토지를 장기 저가로 임차하고 건설 비용을 직접 지원받아 건설,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자금부담이 가장 적고 임대료도 시장임대료보다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주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민이 자율적으로 만든 임대협동조합이 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임대주택협동조합은 한시적 수요자인 학생이 조합원인 학생주택협동조합, 부담능력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에 많이 이용된다.

3. 주택협동조합의 기본원칙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편의상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주택협동조합 중 주택관리협동조합에서 정의한 주택협동조합의 7대원칙을 위주로 기술한다.

1) 자발성과 개방성: 조합의 구성은 자발적이며 조합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다. 단, 특정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주택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나, 학생주택협동조합, 노인주택협동조합과 같이 특정 계층을 위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전에 가입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주택조합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관리되며, 모든 조합원은 지분출자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등한 1인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조합가입 시 조합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특정 주택의 분양에 참여한 경우에는 조합에서 정한 자금을 기일 내 불입해야 하며, 주택 입주 후에는 조합에서 함께 정한 실비의 주택운영 및 관리경비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때 협동조합은 건물, 토지 및 공용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조합원은 조합지분과 일정규모의 단위주택 공간을 배타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4) 자율과 독립: 주택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외부세력의 지시와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다. 주택건설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상호 관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정관과 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통해 조합원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조합원이 만든 정관과 규칙에 의해 전담인원을 두고 주택과 주거단지의 유지, 보수 및 관리, 교육훈련, 협동조합 간 교류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교육, 훈련 및 홍보: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대표, 경영관리자, 조합직원들에게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올바른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일반 대중에게도 조합의 성격과 사명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이웃간 교류를 증대시킨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주택협동조합은 타 주택협동조합, 건설협동조합, 건물유지 보수관련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 전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과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고 상호 지원한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 업무와 조합원 상호 교류활동뿐만 아니라,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매년 주택관리 잉여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4. 주택협동조합의 이점

1) 경제적 이점

- **낮은 주택구입비용:** 협동조합주택은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특히 정부에게 토지를 좋은 조건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할 경우는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아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 좋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 **저렴한 주거관리비용:** 협동조합주택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

으로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주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시장의 주거관리비용에 비해 낮다.(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대략 15%정도 저렴하다고 한다) 또한 주택협동조합은 주거관리비용의 상승을 자체적으로 관리, 통제, 억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의 주거관리비용과 격차는 더욱 커진다.

- **세금절세와 대출이자 절감혜택**: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주택에는 각종 절세혜택이 있고, 분양주택은 개개인이 각자 대출하지만 협동조합주택의 대출은 단체대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 **자산증대 효과**: 시장가격주택협동조합(Market rate or Equity Cooperatives)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상승과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가치상승으로 협동조합 보유 지분의 가치가 올라 조합원 개인 자산이 시장가치 이상으로 증대되고, 제한자산주택협동조합(Limited Equity Cooperatives)의 경우에도 조합에서 정한 비율(예를 들면 물가상승률) 수준의 개인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 **제한된 법적 책임**: 조합원은 모기지 설정 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조합원 개인별로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다소 낮아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 **공동구매를 통한 절감**: 규모의 경제로 인한 주거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생필품을 포함한 각종 물품을 조합원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이점

- **커뮤니티 활성화**: 조합원들이 각종 모임을 통해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조합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연간 예산수립과 같은 정례적인 일뿐만 아니라 단지 내 잔디관리, 협동조합 뉴스레터 제작과 같은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 등 조합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많은 일들이 있다.

- **안정된 주택 거주권 확보:** 조합원은 관련 법, 협동조합 정관과 규칙, 그리고 주택사용계약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정된 주택 거주권을 가진다.

- **악덕 대출기관으로부터 보호:** 조합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악덕 대출기관과의 불리한 계약이나 횡포에서 보호된다.

- **민주주의 의식고양 및 리더십 개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의 민주주의 의식이 고양되고 개인의 리더십 능력이 개발된다.

- **쉬운 주택이전 및 낮은 거래비용:** 소유권이 주택협동조합에 있고 개인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협동조합 내부의 주택교환, 이전, 변경이 상대적으로 쉽고, 주택지분 매각 시 거래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

- **보안기능의 강화:** 협동조합주택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단지 내 보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이웃 간 이해와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단지 내 보안기능이 강화된다.

- **다양한 주택형태 공급 가능:** 조합원이 초기 공급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주택 형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한 주택 내에 3세대 또는 4세대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다양한 세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데도 유리하다.

-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 가능:** 학생협동조합주택, 노인협동조합주택과 코하우징협동조합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Ⅲ. 세계주택협동조합의 흐름

1. 주택협동조합의 배경

유럽에서 주택협동조합이 생겨난 가장 큰 배경은 19세기 중반 산업화의 진

전으로 인한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의 진행은 노동자 계급의 도시 유입을 촉진시켰고, 그 결과 심각한 도시주택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더구나 제한된 도시공간에서 대규모 주택수요가 발생하자 주거임대료가 폭등하고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불량주택이 급속히 확산되어 노동자의 주거안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자선단체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택협동조합을 시작하였다. 물론 국가마다 산업화의 진행 단계와 수준이 다르고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국가마다 다르게 전개되었다.

유럽의 주택협동조합 발생의 또 하나의 커다란 배경은 20세기 전반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다. 당시 세계대전은 주택의 신규공급을 가로막은 데다 재고 주택의 대량파괴로 심각한 공급부족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화는 계속 진전되었고 군수산업이 성장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주택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이러한 심각한 주택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협동조합주택도 그러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 하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여기서는 주택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주택협동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국,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대규모 협동조합주택을 건설한 미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스웨덴의 주택협동조합

역사적으로 스웨덴 주택협동조합은 1873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도시화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주택부족이 심각한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 생겨난 대표적인 주택건축협동조합이 임차인저축은행, 건축협동조합(HSB: Hyresgästernassparkasseochbyggnadsförening; “the Savings and Construction Association of the Tenants”) 과릭스뷔겐(Riksbyggen)이다.

HSB는 1920년대부터 임대료 급등이 도시노동자의 주거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소비자들이 1923년 스웨덴 주거권 운동의 하나로 스톡홀름을 중심거점으로 조직한 주택건축협동조합이다. HSB는 비영리 주택소비자협동조합이면서 동시에 건설회사로, 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조합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HSB는 주택을 건축한 후 조합원에게 할부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로 조합원은 약 54만 명이고, 3,900개의 입주자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릭스뷔겐(Riksbyggen)은 1940년대 열악한 주거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소비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주택건설협동조합으로, 노동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릭스뷔겐은 소비자 조합원이 주구성원인 HSB와 달리 블루칼라 노동조합인 LO가 자산지분의 약 43.2%(2011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노동조합,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전체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1> 릭스뷔겐(Riksbyggen)이 2011년 공급한 주택의 내부와 외부



한편 스웨덴은 전후 주택문제 해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 생산자보조 등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강력히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스웨덴 중앙정부는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백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밀리온프로그램(Milljonprogrammet)을 시행하여 달성하는 등 주거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저리의 융자지원, 저금리정책의 유지, 대출이자에 대한 감세정책, 공공택지의 장기 저가 임대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스웨덴의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주택문제를 시장논리보다는 사회복지논리로 접근하여 풀어가는 정부의 노력이 어우러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게 되었다.

3. 영국의 주택협동조합

영국에서 주택협동조합이 시작된 것은 1961년 노동자를 위한 좋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설립한 로치데일 협동토지건축회사로, 1인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주택건축협동조합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협동조합 성격을 띤 동업조합(co-partnershi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건축협동조합은 이후 주택금융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191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보조를 받아 공영주택(council housing)을 직접 건설하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임대주택 공급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이 때 주택협동조합 추진주체들은 이러한 공영주택에 임차와 동시에 계속해서 출자금을 적립하는 공동소유의 개념을 접목시켰다. 특히 1960년대에 이런 소유와 공공적 임대의 중간적 보유형태라 불리는 혼합보유형태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당시 입주자에게 다소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또한 당시 영국의 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교육훈련기능이 결여되어 협동

조합이 가진 잠재적 힘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고, 결국 1980년대 조합원에게 주택 매수의 권리가 주어지자 조합원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소유주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은 정권에 따라 기본 주택정책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보수당 정권은 공공부문을 억제하고 민간부문의 촉진을 추구하여 기존의 공공주택을 민간에 불하시키는 정책을, 노동당 정권은 주택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표방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비 부담능력이 매우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적 관점의 주택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해 왔다. 영국의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주도하고, 사회주택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민간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주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활발한 공동임대주택의 공급은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를 가로막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미국의 주택협동조합

미국의 주택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는 1857년에 뉴욕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27년의 아말가메이티드주택(Amalgated Housing)으로 볼 수 있다. 이 주택협동조합은 중산층에게 품질 좋은 주택과 훌륭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고, 민주적 관리, 공유된 책임,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존중과 같은 협동조합의 이상을 구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여 뉴욕시에서 결성되었는데, 300가구로 시작하여 이후 1,482가구까지 성장한 주택협동조합이다. 이후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는 학생주택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택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사진 2> 아말가메이트 협동조합주택(Amalgated Coop Housing)



1951년 뉴욕의 주택협동조합은 연방주택재단(UHF: United Housing Foundation)을 설립한다. 연방주택재단은 노동조합과 뉴욕주의 지원 하에 기금을 조성하여 1965년까지 뉴욕전역의 다양한 규모의 23개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5,860호에 달하는 로치데일마을(Rochdale Village)이 가장 대표적인 주택협동조합이다.

또한 1965년부터는 브롱크스(Bronx)에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협동조합인 15,382호에 5만 명이 거주하는 코옵시티(Co-op City)를 건설하게 된다. 연방주택재단은 40년 동안 약 5만호의 주택을 건립한 후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로 인해 그 기능을 축소하여 노인협동조합주택 지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당시 이러한 활약으로 미국 협동조합주택의 약 4분의1이 1945년부터 1960년대에 걸쳐 뉴욕시에 지어지게 되었고, 1990년대 이르러 뉴욕에는 60만호의 협동조합주택에 약 2백만 명이 거주하여 나라 전체 협동조합주택의 대략 2분의1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대략 2분의1 정도의 협동조합주택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협동조합주택은 연방정부의 주택 금융 지원 제한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주택협동조합은 주택보급률, 주거문화 및 기본주택 정책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판단하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 주택협동조합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주택을 사회복지적 관점보다는 주로 주택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한 정책을 펼쳐왔다. 즉, 정부는 저소득 계층에 한해 소량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대기업 중심의 민간업체에 맡겨왔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택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여, 다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규제를 풀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불안, 주거비 폭등, 사회갈등 및 빈부격차의 확대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과 배려 없이 주민의 자발성에만 기초한 협동조합주택의 공급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주택을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에서 조절되는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거나 주택산업이 경기조절을 위한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위생적이고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보다 세분화되고 세련된 주거복지의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임대조건 그리고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주택시장을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앞에서 기술한 협동조합이 이점을 통

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 정부는 주거복지 선진화를 목표로 면밀하고 치밀한 중장기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진국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적 성공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주택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 등과 같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주택 건설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협동조합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이 미칠 사회적 파장, 투기세력의 편법적인 활용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예방,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법률 및 제도의 정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세 번째, 협동조합주택에 대한 공공 보유토지의 공급과 금융 지원을 포함한 정책 지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다. 주택은 토지의 확보와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특히 중하위 계층에게는 토지의 장기임대와 정책적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다. 단, 주택협동조합 추진 속도에서 정부가 너무 서둘러 급하게 추진하거나, 협동조합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나 간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건설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자립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협동조합 민간진영과 정부는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개념과 도입시의 이점, 성공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시민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조합원 스스로 협동조합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기존의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한다. 예를 들면 주택소비자협동조합과 주택건축협동조합 간의 협력, 생활협동조합과의 협력, 마을기업과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협동조합 활

동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진 3> 주택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주택건설협동조합의 포럼장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I.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원과 발전

1. 새로운 협동조합의 탄생: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Cooperative sociali)

1965년 산 베네데토 델 트론토(San Benedetto del Tronto)에서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젠타협동조합을 설립했을 때 주세페 필리피니(Giuseppe Filippini)씨는 자신이 사회연대협동조합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 모델이 70년대 말 발전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 폭발적으로 확산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사회연대협동조합에 기원을 두고 1991년 법제화된 사회적협동조합은 70년대 초의 경제위기에서 시작된 사회교육과 직업편입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탄생되었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자 민간의 시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면서 경제활동이 주축이 되었다. 70년대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스스로를 “복지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익(collective interest)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하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전통과 중소기업가 문화가 발달한 롬바르디아의 브레샤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사회주의 세력이었다. 80년대 초 전 기민당의원인 지노 마타렐리(Gino Matarelli)는 기독교사회주의계열의 협동조합연합조직인 Confcooperative¹에서 협동조합운동의 혁신적인 시도를 조정하고 연합하도록 위임받았다. 그런데 사회

¹ 이탈리아에는 주요한 두 협동조합연합조직으로 기독교민주주의 계열의 Confcooperative와 좌파계열의 Lega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협동조합을 기존의 협동조합법에 맞추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1981년 이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의 실천방식에 적합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리페니와 스칼비니(Scalvini)²가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이 법안을 지지한 기민당 소속 상원의원이 의회에 제안하였으나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10년이 걸렸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과 성과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실천방식이 생긴 것은 기술한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 부문에서 활동하던 조직들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생산과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협동조합이 적합하지만, 다양한 재원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장점을 섭취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방성 및 자원 동원능력과, 자본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장점을 취한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이다.

1991년에 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³은 개별 사회적협동조합을 A, B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민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인간적 향상을 시도하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공익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A유형은 사회/보건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의 운영, B유형은 사회적 불이익자들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한 농업/공업/상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 전개로 구분한다. C유형은 A와 B의 복합 형태이며, 네 번째 유형은 44개의 지역별 연합조직과 중앙연합조직인 CGM으로 사업 컨소시엄형태로 운영된다. A유형이든 B유형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표 1>에서 보듯 대부분의 거래는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² 90년대 중반 Confcooperative의 회장 역임

³ 이 법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의 이름을 따라 일명 Gino Matarelli법이라고도 한다.

<표 1> 사회적협동조합의 고객에 따른 판매의 분포(1999년 기준)

	A(서비스)(%)	B(노동통합)(%)
일반 소비자	4	2
제3섹터(association 등)	6	8
기업	3	28
지자체와 국가	87	62

※ 주 고객이 A유형 매출액의 65% 차지(B유형은 49%)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합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구조를 취하며 기존의 단일이해당사자 중심의 협동조합과 차별성을 가진다. 복합이해당사자는 노동자그룹(일반직원 및 경영자), 이용자그룹(고령자 및 장애인 등), 자원활동가그룹(양심적병역면대자, 종교인 및 일반인 등), 재정조합원과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B유형의 경우 사회적 불이익자가 최소한 전체 조합원의 30%를 차지해야 한다. 논란이 된 자원노동의 경우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오랫동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논의한 결과 전체조합원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타협지점을 찾았다. 법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특히 B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법은 B유형이 일반기업과 경쟁 없이 바로 공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조항은 유럽연합의 경쟁에 관한 규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96년 1월, 공공행정이 공공입찰 조건에 일정한 비율의 사회적불이익자의 고용의무조항을 포함하는 유럽연합 지침 제 20호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마지막으로 법은 잉여의 배당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잉여의 20%는 적립하도록 한다.

1991년 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후속 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노동통합 참여자들을 위한 임금형태 및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한 단체협약도 체결되었다. 이 근로계약에 따르면 사회적 불이익자의 초기 노동시간은 정규노동시간 대비 50%까지 낮을 수 있으나 통상 3년 이내에 정규노동시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어떤 지방정부는 사회적 불이익자,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직접 근로보조금을 받으며 한시적인 기간(6~12개월)동안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총회에서 레이들로 박사가 “공익성을 가지는 부문에서 정부의 예산감축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협동조합방식으로 조직화될 것이다”라고 예견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제정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다. 2005년 기준 약 7,300개가 존재하며 총 244,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991년 제도화 후 해마다 평균 500개가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 비율을 보면 A유형이 약 60%, B유형이 약 35%, 혼합형 및 컨소시엄 형태가 약 5%를 차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 경제위기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빈곤한 남부지역의 경우 노동통합형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사회 및 교육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A유형의 활동영역은 재가도우미, 사회교육 및 비영리단체센터, 치료공동체, 탁아소, 요양소 등이며 B유형은 농업, 녹지 공간 관리, 목공, 인쇄 및 제본, 전산, 세탁, 청소 및 방역, 수공예 등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양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매출에서도 성장을 보이고 있다. A유형의 경우 대부분 지방정부 관할의 공적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B유형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높여줌으로써 일반기업과 협력강화로 운영의 안정화를 이루어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1968년에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법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범칙금을 부담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통합형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직업생활 편입을 쉽게 함으로써 의무고용대상 기업이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일반기업에게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사회적 불이익자의 노동통합 관련 트레비소(Treviso)에서는 고용주 단체와 지방사회적기업 컨소시엄 간에 아주 의미 있는 협약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통합형 사회적협동조합과 일정한 양의

거래를 하는 기업은 1968년법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축소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각 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 경로는 다르나 관련 연구자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지역에 밀착하여 그 지역에 존재하는 연대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발휘하게 하고 지역 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이룩한 점

둘째, ‘딸기밭 전략’으로 좋은 노동 분위기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작은 규모이나 지역연합체(컨소시엄)와 전국 연합체에 소속되어 규모의 경제의 장점을 살린 점(지역에 기반한 작은 규모의 전문 협동조합이 채울 수 없는 기능 보완. 예를 들어 협상, 계약체결, 경영 지원 등)

셋째, 전국협동조합연합회 부문별 연합조직에게 교육훈련을 제공받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노동권보호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원을 받는 점

3.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의 확산: 프랑스의 공동체이익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SCIC)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은 이웃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쳐 새로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한 유형인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이지만, ‘공익 목적을 가지는 복합이해당사자구조’의 협동조합을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지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관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접근하고 있다. 이 경우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의 새로운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이해할 때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외 주목할 사례는 프랑스의 공동체이익협동조합(SCIC)이다. 그 이유는 SCIC이 이탈리아 및 타 국가의 새로운 협동조합에 비하여 지역사회 중심성을 더욱 분명히 하면서, 서비스제공 및 노동통합이라는 제

한된 영역의 공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문화, 환경, 예술 등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시민일반의 생활을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표 2>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현황

	명칭	연도	방식	특성	비고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Cooperative sociali	1991	새로운 협동조합	-A형, B형, 혼합형, 컨소시움으로 구분 -복합이해당사자구조 -이익의 제한적 분배	2005년 기준 7300개, 244,000명 고용
	사회적기업 Impresa sociale	2005	legal brand	-이익비배분의 제약, -노동자 및 수혜자를 포함하는 복합이해 당사자 구조, -사업의 '사회적 유용성 (social utility)' 기준	특별한 이점 없어 활용 미비
영국	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2004	새로운 상법상의 조직 인증제	사회적기업의 자격을 얻 기 위하여 총수입의 50% 정도를 시장을 통해 확보하 는 것이 관례	제정 후 2년 내 1000개 2010년 현재 3561개
벨기에	사회적목적회사 Société à Finalité Sociale	1996	인증제	-복합이해당사자구조	
포르투갈	사회연대협동조합 Cooperativa de solidariedade social	1997	새로운 협동조합	-아동, 장애인, 사회불이익 가정 및 지역사회와 같은 취약집단 통합 -복합이해당사자 구조 -조합원에 대한 이익 분배 금지	
스페인	사회시도협동조합 Cooperativa de iniciativa social	1999	인증제	-사회적배제자의 노동 통합 -이익 분배 금지	
그리스	유한책임 사회적협동조합 KoiSPE	1999	새로운 협동조합	-심리사회적 장애자의 사회 및 직업적 통합	
프랑스	공동체이익협동조합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2001	새로운 협동조합 인가제	-노동자, 이용자, 자원 봉사자, 지방정부, 설립 멤버 등을 포함하는 복합이해당사자구조	2010년 3월 현재 164개 승인
미국 Vermont주	저영리유한책임회사 L3C 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2008	새로운 상업회사	-영리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 -자선 및 교육 목적을 가지는 조직 -프로그램연계투자 (PRIs) 유치 목적으로 제정	North carolina, Michigan, Montana, Georgia주 에서도 준비중

출처: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및 전망(김신양, 2010, 농정연구), 18쪽 일부 수정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은 강력한 사회적경제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공동체이익협동조합(SCIC)’이 2001년에 제도화된 데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의 기여가 크다. 프랑스노동자생산협동조합연합(CGSCOP)은 ‘일자리창출협동조합’, ‘창업인큐베이팅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다양한 실험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법적 틀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노동자, 이용자, 자원활동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SCIC이라는 형태의 개방적인 협동조합 구조를 고안했다.

제도화 이후에도 CGSCOP은 지역 협동조합진영의 자원을 이끌어내며 SCIC의 설립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 연합조직을 구성하도록 측면에서 보조하면서 설립된 조직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이 취약한 시민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화된 데에는 CGSCOP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연대경제 진영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을 도입한 이탈리아나 일반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어떤 유형의 사업형태에게도 적용되는 벨기에의 사회적목적회사(Société à Finalité Sociale, SFS)와는 달리, 2001년 6월28일 채택된 SCIC의 경우 1947년에 제정된 협동조합에 대한 법의 제19조를 수정하여 새로운 협동조합적 지위를 도입함으로써 탄생하였다. SCIC은 현장 활동가들, 특히 경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기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SCIC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association project’를 실현하고자 하는 결사체주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법에서 SCIC에 해당하는 특별 조항을 보면 SCIC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첫째, 비영리성으로 법은 최소한 이익의 57.5%를 비분할적금으로 두어야 하며, 둘째, 협동조합 리뷰를 의무화하고, 셋째, 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공공기관이 출자를 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은 20%로 제한한다.

법제정 후 2002년에 마련된 시행령은 SCIC에 대한 인가절차, 보조금 부여

조건, 협동조합 리뷰의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인가는 협동조합이 소재한 지역의 도청이 담당하며 5년에 한해서 인가가 주어진다. 인가에 필요한 요건은 첫째, 최소자본을 유한책임회사협동조합의 경우 3,750유로, 주식회사의 경우 18,500유로로 정하고 둘째, 조합원 구성에서 최소한 3범주 이상의 조합원 유형을 포함해야 하며, 이 중 임금노동자 및 이용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association에서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 및 기금은 SCIC의 비분할적립금으로 두어야 한다.

SCIC 개요

□ 정의

SCIC은 상법에 규정받는 주식회사, 유한책임신탁회사이다. 그 목적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공익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다.

□ 특징

(1) SCIC은 시장경제부분에서 생산활동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유용성”으로써 일반기업과 구별된다. 또한 SCIC은 그 기업의 참여자와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여건에 의해 구별된다.

(2) SCIC의 운영과 활동방식은 연대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의거한다.

(3) SCIC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범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 협동조합의 노동자
- 이용자
- 자원봉사자
- 지자체, 또는 그 연합
- 협동조합의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하는 개인이나 법인

SCIC은 상기 명시된 조합원의 범주 중 최소한 세 범주를 포함해야한다. 이중 협동조합의 노동자와 이용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집단, 또는 다른 범주의 집단은 소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4) 각 조합원은 총회, 또는 그가 속한 소그룹에서 1인1표를 행사한다. 소그룹 중 하나가 보유하는 투표수가 총투표수의 50%를 상회하거나 1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 (5) 정관에 연 적립금을 규정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법정준비금 배당 후 가용자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6) 지자체는 SCIC에 보조금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출자금이나 출자금에 따른 이익의 배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 (7) 모든 조합원은 이사나 경영인, 이사회, 경영자회의, 또는 감독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다.
- (8) 비영리민간단체는 조건 없이 SCIC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준비금과 자본은 분배되거나 출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인가, 자격 또는 협약, 지원금과 수익은 협동조합에 이양된다.
- (9) 일반기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SCIC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 (10) SCIC은 공개입찰에 응모할 수 있다.

II.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과 의의

보통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협동조합이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순한 사업체란 말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전통에 입각하여 사업을 하는 결사체이다. 사업을 하는 결사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업이라는 것이 결사체에 기반하고 결사체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결사체에 기반하고 사업의 바탕이 된다는 것은 사업조직으로서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의 운영방식이 협동조합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업구조 이전에 우선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들의 관계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과 노동이 분리되기 이전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약속한 이들의 자발적이고 평등한 구조인 조합원이라는 제도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사한 조합원이 있어야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결사체가 바탕이 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사업은 결사한 조합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업체이기 때문에 경영은 경영자, 조합 활동은 조합원이라는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조합원 활동에 의하여 협동조합다운 사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의 결사한 조합원에 바탕을 두고 사업이 영위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왜 그래야 하며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협동조합이 그냥 사업만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이 정의에서 보듯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 사회, 문화라는 종합적인 필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공동의 그 무엇인 열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단순한 사업조직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지만 그 목적은 사람의 실현에 있고 인간의 발전에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활동은 단지 경제활동이 아니며, 협동조합을 경제조직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 그것은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필요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등장은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원 중심의 운영과 구성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협동조합 방식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회적경제의 전통에서 발전되어 온 결사체의 한 형태이다. 그러기에 협동조합 일반의 특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더욱 사회적인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폐쇄적인 공동체를 지양하고 보다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일부는 이용자 및 노동자, 자원활동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적인 조합원 제도를 핵심으로 보고, 다른 일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나 노동통합 등의 기능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보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구성원의 다양성이나 기능만으로 사회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구성원의 다양성이 외모이고 기능은 그 사람의 직업일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외모나 직업만으로 판단할 수 없듯이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그 조직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진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방식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간의 발전과 시민의 사회통합에 있어 지역사회(공동체)의 일반이익을 추구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업문화와 실천을 “노동의 가치를 더 큰 사회적 질에 이르게 한다는 사회적기업정신의 기본 원칙”에 두고 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법은 네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 사람의 치유를 위한 행동

-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인정되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의 회복과 생산적 이용

- 제품과 서비스의 질, 생산방법의 질, 작업장 및 노동자간 관계의 질

-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관계의 민주성, 권리 존중과 개인의 기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동의 질

위 지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기능주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치유와 존중, 그리고 생명과 살림의 가치를 가지고 협동을 위한 관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을 고려하면서도 끊임없이 협동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SCIC 또한 사회적 목적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SCIC은 무엇보다도 지역성을 강조하기에 최대한 지역사회의 많은 집단과의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모색하기 위하여 복합이해당사자구조를 취한다. 지역에 기반한 SCIC이 지역사회에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별할 수 있다.

-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생산조직
- 생산물이 최대한 다수에게 용이한 접근성
- 다양한 이해당사자 동원 능력
- 경영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정도
-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정도

2.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정체성 강화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한 유형이지만 사회적기업의 가시화 및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발전을 주도했다. 실제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제화는 유럽연합 회원국가 내 법제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공동 작업을 하도록 이끌었다. ICA 산하 공업·서비스·장인협동조합을 아우르는 부문조직인 CICOPA의 유럽본부 CECOP 차원에서는 Dugestus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는데 기여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이탈리아의 영향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협동조합의 틀로 사회적경제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전통 속에 위치함을 확인하게 한다. <표 2>에서 보듯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다양하나 일반상업기업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실제 조직구성 및 운영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따른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일반기업이나 활

동의 지속성을 위해 상업 활동을 강화하는 비영리조직 전통과 구분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3. 협동조합기본법을 준비하는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작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 지역사회건설’이라는 협동조합의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물론 바람직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체 속에 지역사회 전체를 안으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양한 이해당사자 구조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특성을 가진 것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자나 소비자(이용자) 뿐 아니라 공급자, 자원활동가, 지자체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을 조직하고 그들과의 일상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의 기본법은 이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기업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의 마지막 세대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이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다. 게다가 선배들이 못다 이룬 사회적 소명을 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 어린 협동조합은 이상에 비하여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혼자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선배들의 지혜와 경험을 빌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힘과 능력을 키운 뒤 선배들이 못한 일을 해내야 한다. 기본법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발전과 팽창 시기가 아닌 위기의 시기에 태어날 이 조직들은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청년, 여성, 장애인, 실업자, 저학력·저기능보유자 등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에 새로운 조직방식이 필요하고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만

들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기존 시장에 뛰어드는 무모함을 버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른바 지역의 사람들과 지역을 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호혜시장의 형성이 이들 신생협동조합의 과제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은 재분배되어야 마땅하나 지역주민에 의하여 보호받고 유지되지 못한다면 지원이 끝난 후 살아남을 조직은 없다. 따라서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최소한의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도움을 청한다면 남이 아닌 원래 가족이었던 선배협동조합 조직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 목적을 잊거나 잠시 접어두었던 많은 협동조합 조직을 찾아가야 한다. 반대로 기존 협동조합은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

농협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창업과 사업발전을 위한 대출서비스를 열어주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미 확보한 소비자를 연계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선배 조직들에게 당당히 도와 달라 요청할 수 있기 위해서 신생협동조합들은 자기만을 위한 사업계획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재래시장활성화 등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키고 청년 창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사업, 지역의 공동자산인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여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사업, 결혼 여성이민자나 노숙자, 장애인과 탈북자 등 이 사회의 소수자들의 통합을 돕는 사업, 무너져가는 농업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먹을거리 사업,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건강권을 실현하는 공동체 의료기관 운영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세대 간의 연계를 이루고, 계층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다른 문화 간의 소통을 매개하며 씨실 날실을 엮어 튼튼한 지역사회 협동경영체를 만드는 일, 그 사업체는 지역사회에 기반하나 사회로 열려있으며,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신양,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관련 TF회의' 발표자료, 2012.

-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기본법의 의미', 시민교육 06호(발간예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2.

-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및 전망' 농정연구 37, 농정연구센터, 2012.

김신양, 장원봉, 『사회적경제의 이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9.

노대명, 김신양, 장원봉, 김문길,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Borzaga, C., 'Italy : The Impressive Development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in Spear, R., Defourny, J., Favreau, L., J.-L. (eds), Taking Social Exclusion in Europe, Ashgate, Aldershot, 2001.

ISTAT, Le cooperative sociali in Italia Anno 2001, Istituzioni nonprofit in Italia, Informazioni n. 50, Roma, 2001.

Lasne, L., 'La vitalité des coopératives sociales italiennes', Participer 533 Mars, 1996.

Margado, A., 'A new cooperative form in France :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SCIC)', Borzaga, C., Spear, R. (eds), Trends and challenges for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in developed and transition countries, Edizioni31, Trento, 2004.

Mattioni, F., Tranquilli, D., Social Entrepreneurs: the Italian Case – Human resources, market and development, Hoepli, 2001.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1. 노동자협동조합의 탄생배경- 산업혁명과 노동운동의 발생

18세기 영국에서 진행된 산업혁명은 약 1만년 전에 있었던 농업문명의 발생 소동에 이어 지구표면에 붙어사는 호모 사피엔스들에게 두 번째로 재수 없는 일이었다. 보통의 역사학자들이 농업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이것을 인류의 위대한 진보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농업문명의 발생은 약 3만 5천년 동안 평화롭게 이어져온 호모사피엔스의 공동체 생활을 파괴했다. 그 오랜 동안 인류는 내 것, 네 것 없이 먹을 것을 나누며 ‘엄마’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잘 있었다. 그저 팔을 뻗으면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나가던 짐승을 한 마리 손보면 되었다.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다. 남은 시간은 빈둥거리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고 음악활동에 종사하였다. 물론 이런 정도의 생산력을 넘어서는 인구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환경사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농업문명이 처음 발생했던 메소포타미아 인근지역, 즉 아라비아 사막은 울창한 밀림지대였다. 이집트문명이 발생한 나일강 인근의 사하라 사막 또한 울창한 밀림지대였다. 인더스강이나 황하강 인근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사람들은 밀림 안에서 덤성덤성 살면서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것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강 주변으로 인구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지금도 사막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인구밀도는 높아지고 먹을 것은 부족해졌다. 부족들 간의 전쟁은 치열해지고 위계질서가 생겼다. 보통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위계질서는 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대장 신, 즉 지배부족과 부하 신들이 결정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 뜨고 난 후 해 질 때까지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물의 상당부분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으나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농업혁명 내지 농업문명발생의 실제 모습이었다.

농사일은 해가 지고 나면 멈출 수밖에 없었고 농민들은 저녁에는 쉴 수 있었다. 약 1만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농사일을 하며 지냈다. 2백여 년 전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러한 노동형태를 또 한 번 바꾸어 놓았다. 이제 산업혁명 초기 면직공장의 노동자들은 저녁에도 불을 켜고 하루 18시간씩 노동하게 되었다. 노동시간은 이후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 또한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산업혁명은 농업 비즈니스보다 옷감 비즈니스가 훨씬 돈벌이가 잘된다는 것을 발견한-재수 없는 발견이었다- 일군의 지주와 장사꾼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처음에는 모직공업이 주를 이루어 농장에는 양떼들을 풀었으나 18세기 들어 면직공업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면화는 영국과 미국의 흑인노예농장에서 수급되었다. 거기서 실을 짜고 옷감을 만드는 일이 바로 공장과 광산을 발생시켰다. 공장에서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기계와 기계를 돌리는 증기기관, 그리고 기계를 관리하고 기계를 옆에서 지키면서 기계보조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철, 기계를 돌리기 위해 석탄이 필요했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어지는 산업혁명기에 공장과 광산에서 일했던 영국 노동자들의 상태는 농장에서 일했던 흑인노예들보다도 참혹했다. 특히 7살부터 12세까지 유아노동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은 17세를 넘지 못했다. 성인남성, 부인들의 상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엥겔스가 24살이던 1844년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상이 묘사되어 있다. 그 내용 대부분은 당시 발간된 신문 기사들을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참상을 목도한 ‘시대의 양심’들 사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다시피 노동조합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온갖 종류의 진보운동-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운동을 포함하여-은 이것을 모티브로 생겼다. 노동자협동조합운동 또한 이를 배경으로 생겨나게 된다.

협동조합운동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로버트 오웬은 180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의 한 지역에서 자기 장인에게 뉴라나크 방적공장을 인수했다. 그는 유아노동을 금지시키고 1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노동 대신 공장 근처에 만든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고, 14살까지의 아이들은 하루 절반만 일을 시키고 절반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노동자 가족에게는 방 두 칸짜리 집을 지어주고 소비구판장을 만들어 양심적으로 생필품을 팔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하루 14시간으로 단축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공장주 오웬은 당시 유럽의 모든 지식인에게 시대의 양심으로 추앙받았고, 많은 수의 오웬주의자들이 생겨났다. 오웬의 방적공장은 물론 현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은 아니었지만 협동조합의 정신을 체현한 것인데, 인간적인 노동, 교육, 공동체 생활의 한 표징으로 기억된다.

2. 1970년대까지의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들이 독자적인 협동조합의 길을 걸었던 것과 달리,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초기시절은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상당부분 중첩되어 진행되었다. 물론 1830년대 영국과 프랑스에서 메뉴팩처 생산방식에서 이어져 온 소규모 장인협동조합들, 모자 생산공, 빵 생산공, 악세사리 생산공 조합이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이 되었다. 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은 그보다는 훨씬 폭넓은 운동진폭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와 남부유럽,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생디칼리즘 운동의 전통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었다. 그 시

발점은 1871년 2개월 동안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자치공동체의 역사적 실험을 진행했던 ‘파리코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리코뮌 당시 파리의 노동자들은 공장을 접수하고 자체적인 생산 활동을 조직하였다. 이 경험은 이후 프랑스와 남유럽에 노동운동의 한 방향으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노동운동 전통은 생디칼리즘과 함께 그람시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람시주의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중시하는 진지전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운동의 일상 활동에 대한 강조는 경향적으로 공장 내에서의 민주주의 문제와 함께 노동자 헤게모니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운동 전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그리고 1960년대 이후 68세대 형성 이후 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운동과 더불어 대규모 ‘종업원 지주제’에 기반한 노동자 기업 인수 또한 이 운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1970년대 영국에서 노동당 정권의 토니 벤 노동 장관의 주도로 본격화된 ‘산업공동소유운동’(ICOM) 또한 많은 수의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어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유고의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이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주관리기업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처분권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경영권과 배당권을 쥐고 있었다. 30여년에 걸쳐 진행된 이들의 실험은 노동자협동조합운동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3. 1980년대 이후 노동자협동조합의 전개와 노동자협동조합 선언

1980년대 이후 유럽경제의 구조조정과 미국의 구조조정,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

은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노동자들의 궁극적인 노동해방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사회전체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고용,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몬드라곤이 같은 규모의 자산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일반기업들에 비해 약 1.5배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이 ‘기업의 목표’를 다른 기업과 달리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아니라 ‘고용의 확대’에서 찾고 있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현재 전 세계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몬드라곤 사람들은 노동자협동조합 연대 기구에서 주요지도부를 구성한다. 유럽의 노동자협동조합 연대기구 ‘CECOP’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노동자협동조합 부문 조직 CICOPA에서도 이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자산규모 50조, 매출액 3조, 총 노동자 85,000명이 일하는 회사까지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경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보인 것만으로도 이들이 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 던진 메시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호모사피엔스 역사에서 신기록이고 몬드라곤의 규모가 커지고 자산이 늘어날수록 이들은 해마다 그 기록을 경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노동자협동조합 또한 2008년 경제위기 국면에서 큰 문제없이 버티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약 20,000여개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들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50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 평균 규모에서는 그리 큰 것이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노동자협동조합은 기업 간 연대를 통한 사업연합을 매우 유연하게 조직하면서 협동조합진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항공, 철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수를 본격화했다. 그 결

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유에스 스틸 등 굴지의 회사들이 노동자소유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자구적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켰는데, 현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노동자소유 주식은 다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소유를 거친 후 기업 가치는 그 이전보다 두 배로 커졌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1980~90년대 기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가운데 노동자 임대기업, 노동자 소유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다. 현재 시점에서 평가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 서기나 관료 출신의 경영자 해게모니가 관철되고 노동자들의 발언권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들 또한 과도기의 노동자 소유와 경영의 기업 체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러시아, 중국과는 반대로 베네수엘라에서는 1999년 차베스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볼리바리안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정부는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펴 노동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해외 자본이 지배하던 국가 기간산업들을 국유화한 이후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 이사의 절반 정도를 선출하는 정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부흥에 발맞추어 2005년 CICOPA를 통해 노동자협동조합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노동자협동조합의 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진폭을 규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내용 중 노동자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규정과 내적 작동 규칙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

1) 기본적인 성격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에 담긴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기초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ILO 권고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의 기본적인 성격을 따라야 한다.

(1)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를 생산하는 것, 인간노동을 품위 있게 하는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자가 경영을 가능케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의 노동과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멤버십은 작업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3)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노동은 조합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노동자협동조합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조합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4) 노동자조합원과 그들의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전통적인 임금노동, 그리고 자영노동과 달라야 한다.

(5) 노동자협동조합의 내부규정은 노동자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동의되고, 받아들여지는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6)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관계와 경영,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제 3자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2) 내적 작동규칙

노동자협동조합은 내적인 작동에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조합원들의 지위, 생산성,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요구되는 기능, 책임, 복잡성,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최고와 최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합원들의 노동에 공평하게 보상해야 한다.

(2) 자본의 증식과 배분 불가능한 유보자금 및 기금의 적절한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적절한 기능과 좋은 작업환경을 갖추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설비를 작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 (4) 노동자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사회적 안전망, 산재 시스템을 제공하고, 모성보호, 육아, 미성년 노동의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5) 조직의 결정 과정과 경영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 (6) 노동자협동조합모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발전을 담보하고, 혁신과 좋은 경영을 자극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향상적인 교육, 훈련과 정보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 (7) 가족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
- (8)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다 유연하거나 일시적으로 만드는 목적을 가진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임시방편이 되는 것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4.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는 2012년 12월 이후 한국은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싹을 중심국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주로 기존의 특성화된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특별법과 달리 매우 포괄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졌지만 주로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운동은 대략 세 가지 길로 전개될 것이라 예상된다. 첫째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둘째, 기존의 기업들을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셋째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자들의 기업소유 운동을 통해서다.

1) 창업은 청년창업, 장년창업, 노년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청년창업은 2000년 초 벤처붐 정도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협동조합 진영은 이러한 창업에 대해 다각도

의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예퇴직자나 자영업 종사 장년층의 협동조합 창업도 많아질 것이다. 일본의 중,고년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실버창업 또한 장려될 것이다. 단위협동조합의 규모는 소규모에서 시작될 것이지만 기존의 1인 창업에 자본금 조달의 용이함과 리스크 분산의 효과,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의 형태가 협동조합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은 현재 비영리단체,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협동조합 법인격을 취득함으로써 기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민주적 운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 인수 움직임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동조합운동이 연일 시끌시끌하게 진행되고 노동자협동조합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경우, 이들 기업 노동조합들 또한 노동자 소유와 경영에 대해 더 큰 관심을 지니고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수한 기업들이 꼭 협동조합 법인격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상장 대기업들은 아마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법인격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러한 기업을 노동자 협동조합의 범주에 넣고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진행되는 여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을 벌이는데 검토해야 할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더 큰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반 기업들이 같은 업종이나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다른 업종끼리 기업 간 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이와 달리 협동조합 제도는 협동조합 기업 간 연대가 매우 유연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형태이다. 기본법

에서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협동조합들은 빠른 속도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별, 업종별 연대 조직은 매우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개별 협동조합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같은 업종의 중소 규모 경쟁자들을 제압하는데 이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협동조합 전통과 협동조합 문화가 아직 일천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집단 안의 최초 협동조합은 1956년 만들어졌는데, 이들 초기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이 이미 그러한 경험을 했고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합원으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민주주의의 전통은 매우 깊고 넓다.

반면 한국은 산업화 기간 자체가 매우 짧고 노동조합운동의 전통, 민주주의의 전통 또한 매우 취약하다. 한국에서 노동자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낯설고 들어본 일도 없는 어떤 것이다. 이들이 조합원 동료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며 뜻을 맞추어 가는 데에는 초기부터 험한 길이 예정되어 있다. 의견 대립과 다툼은 일상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뽑은 임원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일정 기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필자는 지난 세월 한국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혹은 자문과 교육에서 이러한 일을 목도해 왔다. 장사가 잘되건 안 되건 협동조합 문화의 일천함은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책도 마땅치 않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협동조합문화가 정착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보다 먼저 자리잡은 협동조합 운동의 협력과 격려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과 관리 감독은 협동조합운동을 정상으로 발전시키는 데 언제나 마이너스 요인이었

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은 처음엔 달콤한 사탕처럼 입에 감기지만 결국에는 입맛을 버리게 한다. 자생력을 떨어뜨려 혼자서도 충분히 사냥을 할 수 있는 늑대 새끼를 목동이 없으면 굶어 죽는 양으로 만들고 만다. 우리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자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협동조합과 협력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정부 관리들과 여러 차례 만나 협동조합 관련 토론을 하면서 정부 입장을 경청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는 정부와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지원과 피지원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통 다음의 세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째, 협동조합 관련 종합 통계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농협은 농림수산부가, 신협은 금융감독원이, 생협은 지식경제부가 관리한다. 앞으로 만들어질 협동조합은 아마도 기획재정부 소관이 될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소관이다.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신협, 생협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통계를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협동조합 통계가 없으면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이 모두 장님이 된다.

둘째, 국공립대학 안에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학부, 특수 대학원, 아니면 창업교육 과정도 좋다. 젊은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 저변을 넓혀 달라는 것이다. 사립대학에게 이것을 요구하기는 힘드니 국공립대학이 일단 이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셋째,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 협동조합, 혹은 조합원 노동자들에게 보증해 주는 메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보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증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이들 기관은 상당 기간 “전례가 없으므로”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을 검토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지게 될 것이다. 빨리 전례를 만들 테니 메뉴얼 만들고 보증할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다이내미즘과 고용 문제의 심각함, 그리고 활동가들의 가열찬 투쟁이 필자의 예상을 깨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기본법이 있는 나라는 유럽과 우리나라 뿐이다. 사실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쓴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참고 문헌>

1. 노동자협동조합의 탄생배경- 산업혁명과 노동운동의 발생

F. Engels, 박준식, 전병유, 조효래 공역,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세계, 1988.

도날드 휴즈, 표정훈 역, 고대문명의 환경사, 사이언스북스, 1998.

김종현, 영국 산업혁명의 재조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崔夢龍, 인류문명발달사: 도시·문명·국가, 주류성출판사, 2007.

고바야시 도시코, 이수경 역, 5천년 전의 일상: 수메르인들의 ‘평범한’ 이야기, 북북서, 2010.

한상규, 영국 산업혁명기의 유아교육에 관한 고찰, 幼兒教育論叢, 2006.

2. 1970년대까지의 노동자협동조합

玄在烈, “1871년 파리 코뮌하의 民衆組織”, 釜大史學, 1992.

채진원, “1871년 파리코뮌과 시민사회: 아렌트와 마르크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정치학 회보, 2006.

이정희,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김금수, “독점자본주의의 출현과 노동자계급의 투쟁”, 노동사회, 2002.

김수진, “생디칼리즘 연구”, 노동사회, 1999.

이구표, “그람시와 맑스주의: 사회주의 투쟁 전략으로서의 ‘진지전’의 성격과 한계”, 統一問題와 國際關係, 2007.

윤민재, 그람시가 들려주는 헤게모니 이야기, 자음과모음, 2006.

安錫敎, “유고의 經濟改革: 分權의 計劃과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中國市場情報, 1988.

3. 1980년대 이후 노동자협동조합의 전개와 노동자협동조합 선언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 역사비평사, 2012.

김성오,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94.

中川雄一郎,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조류: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영국

커뮤니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韓國協同組合研究, 2002.

Monica Los,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한국노동연구원, 2006.

신범철, “미국 従業員株式所有기업의 성장과 示唆點”, 증권금융, 2001.

로버트 오크샷, 박노근 편역, 미국의 종업원 소유 기업들, 사람생각, 2000.

이상준, “체제전환국가의 사유화와 기업소유 및 지배구조변화: 러시아, 체코, 폴란드 비교”, 슬라브研究, 2003.

이현대, 윤인하, 노연탁, “러시아의 기업지배구조”, 産業研究, 2008.

양한순, “중국식 신자유주의와 차별화된 공동체 성원권: 성공한 향진기업 화시촌(華西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2008.

동복하,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2009.

정재원, 성문주, “현실사회주의 소련과의 비교로 본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2010.

김창근,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운동: 가능성과 과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0.

안태환, “베네수엘라 혁명: ‘대중의 요구’와 ‘사회적 소유’의 함의”, 중남미연구, 2011.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 개념

지난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은 협동조합을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유헌회”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ICA가 협동조합의 목적으로 정의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망 충족(이하 ‘조합원촉진’이라 한다)은 많은 국가에서 협동조합 관련법의 제정과 정책 입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천명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를 입법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테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협’이라 한다)법(2010)은 제1조(목적)에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소협은 조합원촉진을 위해 생필품 혹은 경제재를 공동으로 대량 구매하여 소량으로 제공하는 협회이다. 그리고 법률적 성격도 소협은 기업과 다를 바 없다. 이외에도 소협은 조합원의 개인 가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기구이다. 이를테면 유리한 조건의 구매를 위해 조합원이 위임한 구매 기능을 소협이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촉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협은 조합원촉진을 위한 조합원의 자조(自助)조직이다.

II. 특성

상기한 조합원촉진은 입법자가 소협에 지시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입법자는 촉진이 무엇이며, 어떠한 촉진 조치가 소협에 허락되고 어떤 것이 허락되지 않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촉

진은 입법자가 소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촉진의도가 제시되면 소협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조건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¹ 그러므로 촉진 위임의 내용은 조합원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소협이 조합원의 욕망 충족에 도움이 된다면, 조합원촉진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보통 비용 절감의 효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조합원의 물질적 욕망 충족을 위한 비용이 소협에 의해 절약될 때 나타난다. 또한 소협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사업(예: 의료사업)을 경영하여 조합원의 욕망 충족에 기여한다면, 이것 역시도 조합원촉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협은 조합원촉진과 관련한 조합원 거래에서는 이윤(profit)을 추구하지 않는다. 조합원은 소협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소협이 이윤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이윤을 획득한다면, 이는 촉진위임에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의도의 이윤 획득은 조합원촉진에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원촉진은 어디까지나 소협의 목적이지, 이윤획득이나 분배를 겨냥한 특수 의무는 결코 아니다. 이처럼 소협은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 추구에 집착하지 않고, 그 대신 원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소협의 능동적 기업 활동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소협법이 명시한 조합원촉진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창출한 성과를 조합원이 이용할 때 달성된다. 이를테면 소협 경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합원이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이 소협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조합원이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합원의 참여는 소협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이용자로서 조합원의 동일성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소협이 조합원의 자조 조직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자기 책임으로 소협을 스스로 관리·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된다면, 조합원의 동일성이 약화되어 소협의 성과가 조합원촉진을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자조의 동기가 감퇴하여 조합원촉진이 달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소협의 촉진성과는 오로지 자조, 자기책임, 자기관리, 연

¹ 전형수, 협동조합법의 목적과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19권, 2001, 34~35쪽

대 등 4가지 요소의 기능적 관계에 의존한다. 개인의 힘보다 공동의 힘이 강하다는 논리는 바로 이 4요소의 기능적 융합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 개인의 다양한 힘이 아무리 많아도 한 덩어리로 뭉쳐지지 못한다면 이 논리는 부정된다. 소협이 필요한 것은 힘의 압동사니가 아니라 힘의 응집력이다. 이에 필요한 것은 조합원의 개인적 자조보다 연대적 자조이다. 이와 같은 소협의 기능적 메커니즘은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을 공동의 힘으로 억제하고 동시에 개인의 발전동기를 높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III. 역사적 발전

소협은 19세기 중엽에 발생하였다. 당초 소협은 조합원촉진 외에도 사회 개혁적 목적을 추구했다. 그 중심에는 탁월한 협동사상가이며 사회개혁자인 영국의 오웬(Robert Owen)이 있었다.² 그에 따르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산물이며, 인간의 불행은 오로지 무지와 무식에 기인하므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인간은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이윤이 사라질 때 가능한데, 이윤은 노동자가 생산한 노동 산물을 노동자가 다시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국 노동자의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윤 제거의 가능성을 소협에서 찾았고, 이는 1844년 영국 로치데일 공정개혁자(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의 소협운동을 이끈 주된 동기가 되었다.

이 로치데일 소협은 인간적 연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동시에 가난을 극복하고자 상호 협력하는 자조의 노력이 얼마나 눈물겨웠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 공정 개혁자들이 경영 방침으로 제시한 것이 후에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로치데일 원칙이 되었고, 이를 ICA는 1937년 협동조합 원칙으로 채택하고 많은 국가에서 협동조합의 법률적 승인 혹은 협동조합촉진을 위한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² Stavenhagen, G., *Geschichte der Wirtschaftstheorie*, Göttingen 1969, pp. 134~135.

이를 계기로 소협운동은 전(全)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적 자조에 바탕을 둔 사회 개혁의 대안을 로치데일 소협에서 찾았다. 이를테면 노동과 자본의 계급 대립을 협동조합으로 극복하고자 ‘노동자 교육조합’을 조직하고, 이 조합의 회원들과 함께 ‘노동자 교육조합의 소비 및 저축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조합은 식료품 업자와의 공급 계약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여 여러 지점을 가진 견실한 소협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생산성 증대에 목적을 두고 소비자의 관심을 촉진하고자 지점 중심의 경영 전환과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영세상인 단체와의 정치적 마찰을 유발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소협을 회원으로 하는 ‘독일소비조합중앙회’가 조직되었다. 이와 동시에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경영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면서 소협의 발전을 촉진하였다.³

하지만 소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 인물은 라살(Lassalle, Ferdinand)이다. 그는 소협의 설립으로 노동자의 상태가 개선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주장은 그의 임금철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평균임금은 연명(延命)에 필요한 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비록 일부 노동자들이 모여 소협을 조직해도 임금수준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소협의 저렴한 물자 제공으로 노동자 조합원의 고통스러운 처지가 완화되고, 이로써 소협에 노동자들이 점점 많이 모여든다면, 임금철칙이 발동하여 임금은 소협으로 인해 감소한 생계비만큼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라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운동에 소극적이었고,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소협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889년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이 소협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협동조합의 유한책임을 법률로 허용하여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자, 많

³ Oldenwurtel, G., Pfeoffer, Eduard, in E. Mändle (ed.), Handwörterbuch des Genossenschaftswesens, Wiesbaden 1980, pp. 1335~1339.

⁴ Schultz, R., Genossenschaftswesen, Sammlung Götschen Band 1249/1249a, Berlin 1970, p. 34.

은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소협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19세기 말 무렵 독일 소협은 르네상스를 맞았다. 이후 나치(Nazi)정권의 전쟁 물자 공급처로 전략한 소협을 재건하고자, 1954년 매상고 3%의 이용고 배당을 오로지 소협에 대해서만 법률로 허용하여 빠른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 비조합원 거래를 함께 허용하면서 조합원 가치가 약화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 자본조달 가능성을 넓히하고자 ‘Co-op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소협이 늘었다. 그러나 1977년 법인세 개정으로 자본조달은 회사 전환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 이로써 유행처럼 번졌던 회사 전환은 주춤하였고, 소협 분야는 안정을 찾았다.⁵

하지만 소협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기업합병, 집중, 전환 등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 협동조합 이론이나 이념보다 사업에 치중하였고, 그 결과 약화된 소협의 이미지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스칸디나비아 제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⁶

역사적으로 보면 소협은 고난(苦難)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난을 극복하고자 소협 운동이 있었다. 그 기원을 1920년 5월 최초로 설립한 ‘목포 소비조합’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소협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72년 ‘한살림’의 탄생 배경이 된 원주 지역의 신용협동조합 건설 운동과, 1979년 강원도 평창군 신리에서 설립된 ‘신리 소협’부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⁷ 이후 소협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아이쿱(iCOOP), 한살림, 여성민우회생협, 두레생협,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여러 소협들이 환경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먹을거리 확보 및 제공, 경쟁 사회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해소

⁵ Bak, S., Konsumgenossenschaften, in E., Mändle/W., Swoboda (ed.), GenossenschaftsLexikon, Wi-esbanden 1992, pp. 374~375.

⁶ Rauter, Anton E., Konsumgenossenschaften in europäischen Ländern, in E., Mändle/W., Swoboda (ed.), idid, pp. 376~377.

⁷ 김형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식민지 시대의 소비조합운동-을 찾아서,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2, 17~18쪽.

와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 생필품 판매 독점화 견제 및 골목 상권 보호·육성 등 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IV. 과제

소협은 우리 삶이 채우는 그릇이다. 우리가 이 그릇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따라 소협의 운명은 달라진다. 그 일례가 지난 1998년 7월 해산된 독일 굴지의 소협 ‘Co-op Dortmund-Kassel’이다.⁸

이 소협은 해산 10년 전인 1989년 말 슈퍼마켓 248개, 대형마트 16개와 이외 74개의 매장과 센터를 운영했다. 조합원은 486,303명이고 연간 매상고는 250억 마르크에 달했다. 그리고 동년도 매장 현대화에 약 4,500만 마르크를 투자했고, 31개의 매점을 새로 열어 총 25,000km²의 매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12개의 매점 공간을 넓혀 조합원들에게 특별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1989년도 말 이사회는 1.5%의 이용고 배당(총액 1,950만 DM), 출자 1좌당 100마르크 이상 배당(총액 570만 마르크), 우선권(양도 가능하지만 투표권이 없음)에 8.25%(3,000만 마르크의 우선권 자본에 대한 240만 마르크) 배당을 총회에 제시했다. 1992년 말 이 소협의 잉여금은 1989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2,000만 마르크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소협은 이용자로서 조합원의 역할이 활발한 반면 조합원의 충성심과 적극적 참여도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무렵 이미 해산의 징후가 감지되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 1) 정관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이해를 촉진해야 함을 이사회와 과제로 명시했다.
- 2) 지난 수년 간 이용자 조합원에게 매력적인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 즉 이용고 배당 대신 자본회사의 경우처럼 ‘투자자조합원’의 자본 참여를 촉진하기

⁸ Münkner, Hans-H., Führungsprobleme im Fall der Co-op Dortmund-Kassel, in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Genossenschaftswesen (ZfgG), Band 57 Heft 2, 2001, pp. 198–207.

위해 고(高)분배 고(高)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했다.

위 1)의 경우 소협은 조합원의 자조 조직이며,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조합원 촉진임을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테면 조합원촉진과 비조합원인 일반 소비자의 이해 촉진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룬다면, 이는 조합원촉진을 경시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조합원이 없는 소협으로 남게 된다면, 그 결과 소협은 변질 내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표현을 달리해 소협의 임직원들이 협동조합의 생활양식(modus vivendi)을 알고, 협동조합적 경제조직의 강약(強弱)을 명확히 구분함과 동시에 대규모 협동조합 그룹에 적절한 영업 정책을 개발하였다면, 일반 소비자촉진은 소협의 주된 과제인 조합원촉진의 부산물로서, 또는 결과로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처럼 소협의 주(主)목적과 부(副)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다.

위 2)의 경우 협동조합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란 점을 망각하여 협동조합의 실패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이다. 협동조합의 논리에서 보면 '돈'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2차적, 봉사적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의와 신뢰에 근거한 조합원 간의 인적 협력이다. 그럼에도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이 이윤 추구 등을 위한 돈 중심의 경영을 최고의 선(善)으로 여긴다면, 이는 시중의 영리 기업과 다를 바 없다. 조합원들에게 시급하게 자본을 조달하는 유일한 대안을 '고(高)분배 고(高)수익'으로 여긴다면, 이는 자본회사로 협동조합 전환을 요구한 것과 같다. 그 결과는 협동조합의 실패이며, 이를 확인한 것이 'Co-op Dortmund-Kassel' 소협의 몰락이다.

상기한 실례는 특정 국가의 특정 소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규모의 경제를 위한 기업 합병과 집중, 투자 확대를 위한 자원(財源)의 다양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촉진을 희생으로 하는 성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충성심을 외면한 성장의 끝은 다름 아닌 협동조합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Co-op Dortmund-Kassel'이 그 역사적 사례이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소협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조합원축진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관측된 조합원축진 중심의 기업 경영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의 이미지 강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조합원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조합원과의 소통을 촉진한다. 이와 동시에 소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예: 일본 소협)⁹

2) 다국적 체인점과 대등한 경쟁력 유지: 이를테면 국내 지역 차원에서 조합원 관계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가별 중앙 조직과 대형 소협이 국제적 수준에서 규모 경제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동조합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소협이 참여한 Coop Norden; 스위스의 Migros 협동조합연합회)

3) 마을 상점 협동조합운동: 이는 주식회사 유형의 소협이 실패한 곳에서 주변 상점들이 모여 소규모의 소협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상업적 체인점과 소매상들이 영업을 포기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네 상점들이 시작한 소협 운동이다.(예: 구(舊)동독 지역의 마을 소협; 영국의 농촌 재건 프로그램)

V. 대안-소협 지도자의 자세

상기한 3가지 경영전략은 다만 불황 속에서 소협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주된 목적은 소협의 장기적 발전이며, 조합원축진이 그 가능성을 제공한다. 조합원축진은 다른 경쟁 기업들이 제공할 수 없는 협동조합 고유의 경쟁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조합원의 자조조직이다. 만약 소협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면, 조합원으로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자원을 맡기려고 하

⁹ 사이트 요시아키, 현대 일본생협운동사, 다나카 히로시 옮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2, 205쪽.

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협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합원 가치 증대, 즉, 조합원촉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조합원은 소협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조합원을 위한 최대의 봉사는 소협의 임직원 등 지도자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조합원촉진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방향으로 조합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지도자는 조합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소협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합원의 눈으로 소협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소협의 지도자로서 다음의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1) 조합원들 중심에서 이들의 이해를 민주적 방식으로 조정, 융합하여 조합원들의 존경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많은 작은 힘을 하나의 큰 힘으로 뭉쳐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 운동이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소협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2) 특정 조합원이나 조합원 그룹의 이해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바른 품위를 유지하여 조직 경영에 관한 위계를 세워야 한다. 나아가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하는 소협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3) 소협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보호, 육성하여 우리 삶의 유익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전문가적 자질을 소협의 지도자는 갖추어야 한다.

4) 신(新)자유주의 시대에 협동 논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시장 경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추세에 편승하여 협동조합의 중심을 인적 연대에서 자본과 경쟁으로 옮기는 국가적 재교육(간섭)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생산재의 사유화와 경쟁의 폐해를 협동과 연대로 대처하고자 발생하였으며, 이를 위해 매진하여 왔던 협동조합을 다시금 경쟁으로 내모는 일종의 모반이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란 협동조합의 전통적 모토는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체제 극복의 수단이 아니다. 이는 협동조합적 협동의 장점을 내세워 시장경제가 협동조합의 우수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자발적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소협이 지도자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협동조합적 협동과 연대의 문화를 무력화시키는 사회적, 국가적 도전에 대처하는 적극성을 견지해야 한다.

5) 협동조합은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을 공동의 힘으로 억제하고, 동시에 개인의 발전동기를 높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소협이 지도자는 이 명제(命題)를 알리고 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명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조합원축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 사고를 지니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소협이 지도자는 이상형이 되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보수적 경제철학으로 무장한 강자와의 경쟁에서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사투(死鬪)를 벌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도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가난에 찌든 절망적 삶을 떨쳐버리는 기적의 무기이다. 소협은 바로 이를 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 간의 상투적 갈등이 전쟁과 혁명에 의존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이는 노동과 자본의 이상적 배합을 요구한 것이며, 협동조합 사상이 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¹⁰ 이는 다름 아닌 협동조합운동의 전(全)세계적 전파를 요구한 것이다. 소협이 지도자는 이 요구의 효과적 충족을 위해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적인 이상형을 갖추어야 한다.

VI. 맺음말

우리의 삶이 채우는 소협이 우리의 운택한 삶을 위해서는 조합원축진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수백 년의 협동조합 역사를 통해 검증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를 확인한 것이 Co-op Dortmund-Kassel의 사례이다.

이를테면 Co-op Dortmund-Kassel의 몰락은 협동조합이 실패할 경우 잃은 자

¹⁰ 강일선, 협동조합사상에 대한 정치경제적 재조명 -탈국가화 조류의 대안으로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3집 제1호, 2005, 15쪽.

는 다름 아닌 조합원이란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본질에 어긋나는 성장 전략은 그 끝이 협동조합의 실패란 것도 Co-op Dortmund-Kassel의 파산에서 배웠다. 또한 협동조합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경쟁 도구는 조합원축진이란 것도 Co-op Dortmund-Kassel이 소협이 무대를 떠나면서 남겨 놓은 것이다.

이외에도 Co-op Dortmund-Kassel은 협동조합의 이념과 이론 대신 다만 규모의 경제를 위해 사업 확대에 치중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려주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지도자가 견지해야 할 자세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주었다.

소협의 임직원은 의도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혹은 무의식적일지라도 다른 유형의 기업으로 접근을 막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궁지로 몰고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Co-op Dortmund-Kassel에서 배워야 한다. 세계화된 시장의 도전에 맞선 소협이 Co-op Dortmund-Kassel을 반면교사로 삼아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 머리말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형인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 위기와 연이은 대형 은행들의 파산 또는 국유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은행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를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은행 체계는 ‘단기적 관점에서 주주들의 이윤 극대화 추구’라는 목적 탓에 실물경제와 괴리된 각종 상품을 개발하여 ‘투기’를 하면서까지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게 된다.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업은행 체계는 언제든 일탈을 감행할 수 있는 유인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체제의 작동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하반기 ‘1%의 탐욕과 99%의 분노’를 상징하는 ‘아큐파이(Occupy) 시위’ 와중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20대 여성이 새로운 깃발을 들었다. 개별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대형 상업은행의 계좌를 없애고 중소 은행이나 신용조합으로 이체하자라는 ‘계좌 전환의 날’을 주도한 것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의 구제금융을 수혈 받은 대형 은행들이 빈곤층을 괴롭히는 데 분노’ 한 6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짧은 기간에 이 운동의 취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중반 신용조합의 발상지인 유럽 지역에서는 2008년 이래 금융시장에서 다른 상업은행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 등지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 부문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

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한 모델’, 이것이 바로 유럽과 북미의 협동조합은행이 오늘날 받고 있는 평판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행은 과연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호평을 받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는 협동조합의 독특한 형태이자 대안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용조합의 탄생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은행의 훌륭한 성과를 가능케 한 지배 구조의 특징과 고유한 경영전략 및 그 성과를 ‘유럽 협동조합은행 연합회’(EACB)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성공적인 협동조합은행 두 곳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신용협동조합의 탄생과 발전

근대 협동조합은 세계 각국에서 다수 주민들이 처한 불리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집합적 행동의 산물이다. 당대의 지배적인 경제체제가 주로 그 사회의 소수를 위한 부의 축적에 기여하면서 불평등을 강화할 때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그 시초부터 단지 개인의 생존권 모색 수준을 넘어 사회운동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선발 자본주의국가인 영국에서 18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된 소비조합은 노동자들의 빈약한 구매력을 넘어서고자 했던 집단적 시도였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성장한 신용조합도 바로 농촌과 도시에서 금융 소외를 겪고 있던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1849년 독일 라인 계곡 안하우젠 마을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F.W. Raiffeisen)이 농촌 지역에 최초로 신용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제로 설립해 그 지역에서 영업하고 회원에게만 대출’하는 이 상호금융은행 형태는 급속하게 퍼져 나갔으며, 훗날 라이파이젠은행으로 이름이 바뀌

었다. 1910년에는 조합 수가 1만 5,517개에 이르고, 조합원 수도 260만 명에 달했다. 농촌 지역에서 소농 경영자들에게 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 이른바 ‘라이파이젠 모델’은 이렇게 성장했다. 다른 하나의 신용조합은 ‘슐체-델리치 모델’로 불리는 것인데, 1850년 당시 베를린의 판사이자 자유주의 정치인이던 헤르만 슐체 델리치(Franz Herman Schulze-Delitzsch)가 도시 지역에서 설립한 민중은행(popular bank)이 그 시초였다. 도시의 직장인이나 중소기업 경영자의 신용 욕구 해소에 기여한 민중은행은 1910년에 이르러 2,103개 조합, 100만 조합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1인1표, 조합원 이익배당, 지분 소유 제한 등이 그 특징이었으며, 처음에는 조합원에게만 대출하다가 점차 비조합원들에게도 문을 열어 두었다.¹

독일에서는 19세기 중반에 농업혁명이 전개되어 농노제 소멸로 농지의 소유권을 갖게 된 소농들이 무방비 상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늦어진 공업화 탓에 주변 농촌 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수공업 형태가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슐체는 자신이 읍장으로 재직하던 지역 주민들의 주요 문제가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중공업자들이 아닌 민중을 위한 은행 설립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가 설립한 최초의 대부 조합원 10명은 모두 직공이었다.²

슐체 시스템의 특징은 조합원 1인이 1주(株)로 교환되는 출자를 하고(분할 납부 가능), 그 주의 가치를 일반인들이 신용조합의 운전자본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고정했다는 것이다.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잉여금의 20%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후에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신용조합이 조합원에게 대부해 줄 때는 친지나 지인에 의한 대인 보증이나 보증인에 의한 담보를 요구했다. 신용조합은 전문가가 경영하고 총회에서 선출된 관리평의회에 의해 감독을 받는 유급 이사가 3년간 실무를 담당한다.

라이파이젠 모델은 출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슐체 모델과 달랐다.

¹ 스테파노 자마니, 베라 자마니 지음, 송성호 옮김, 김현대 감수,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45~46쪽.

² 존스턴 버첼 지음, 장종익 옮김,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 29쪽.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고 자신의 농장, 가축 및 농구를 자기 책임의 최종 담보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잉여금은 배분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유보하고 대부분 자금은 소액 저축이나 적립금으로 조달한다. 처음에는 소규모 조합이라 유급 직원은 회계 담당 한 명이면 충분했다. 라이파이젠은 조합원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인격도 중시했으며, 농촌 교구 목사의 리더십에 의존하여 하나의 농촌 지역에 하나의 조합만 설립하도록 했다. 이처럼 독일에서 협동조합은행은 20세기 들어와서도 소농과 직공이 영국에서처럼 소멸 당하거나 슬럼가에 방치되지 않고 어엿한 사회계층으로 존속하는데 기여했다.³

2차 대전 후 유럽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급속히 성장했다. 독일에서는 1972년 라이파이젠 계통의 은행과 술체 계통의 은행이 합병하여 하나의 협동조합은행 부문으로 통일되었다. 스위스에서는 라이파이젠 부문이 크게 성장했으며, 사회적 연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신협철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협은 자신들의 업무를 여전히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예금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조합원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은행이 활동하고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아그리폴’이고 그 다음으로 ‘그레디 뮤추엘’과 ‘그레디 꼬페라티프’가 있다.⁴ 네덜란드에서도 독일처럼 북부에 위치한 라이파이젠은행들과 남부에 위치한 서민은행들이 1972년 라보방크로 합병하여 완전한 통합 조직이 되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민중은행과 라이파이젠은행이 합병하지 않고 자율적인 두 개의 중앙 기구로 남아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라이파이젠은행들은 협동조합 형태인 반면, 서민은행은 주식회사의 형태이다. 스페인 협동조합은행들은 독일 모델을 빌려왔고, 포르투갈은 프랑스 모델을 받아들였다. 바스크 지방의 유명한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에서 ‘인민금고’는 수많은 개

³ 같은 책, 29~31쪽.

⁴ 같은 책, 175~178쪽.

별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북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신협이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캐나다에서는 19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퀘벡 지역의 ‘인민금융’이 1세기 동안 데잘당금융그룹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11년 현재 유럽 협동조합은행은 “4,000개의 지역 및 소매 은행들-5,000만 명의 조합원-1억 8,100만 명 고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 경제 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은행들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인구 대비 조합원’ 비율을 보면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6개국에서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199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 비율이 14%에서 17%로 증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28.5%, 프랑스 25.5%, 핀란드 23%, 그리고 독일 19.8%의 순서이다. 이것은 명백히 협동조합 모델의 선호도 증가를 보여준다. 협동조합은행들은 또한 유럽 예금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⁶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에서도 신협은 새롭게 조직되고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 1960~70년대에 급성장한 한국의 신협은 그 규모로 보나 운동성으로 보나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이 워낙 빈곤하거나, 신협의 장점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정부가 지역의 금융 부문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 때문에 협동조합금융이 좌절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소액 대출로 지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와 한국에서 신협과 농협은행 부문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협동조합 고유의 성격과 장점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⁵ EACB, “More than a Bank, a Co-operative Bank” (Annual Report, 2011), p. 1.

⁶ EACB, “European Co-operative Banks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Turmoil: First Assessment”, (Research Paper, 2010), p. 13.

3. 협동조합은행 모델의 특징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앞에서 본 것처럼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탄생한 신용조합이 20세기 이후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조건에 적응하면서 협동조합은행으로 발전해 왔다. 같은 금융 부문의 협동조합이면서도 신용조합(Credit Union)과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은 그 규모와 활동 방식에서 구별될 수 있다.

우선 신용조합은 특정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은행으로서, 다른 서비스가 부가되더라도 예금과 대출이 주된 활동 업무이며 조합원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1994년 이래 미국의 신용조합은 비조합원에게도 예금을 모집했으나 작은 비중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협동조합은행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예금을 받고, 은행 서비스 또한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대출의 경우에도 조합원에 비해 특혜 사항이 적지만 비조합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신용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지역적, 직업적 자격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행은 특별한 자격 제한 조건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둘 다 협동조합으로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의 운영 형태는 나라마다, 시기에 따라 다양하지만 상업은행처럼 소수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게 및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진 조합원들 및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초기 소규모의 신용조합이 나중에 대규모의 협동조합은행으로 발전, 대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와 후자가 네트워크 조직 형식으로, 또는 지점과 중앙회 형식으로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금융 본래의 사회적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전국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대형 상업은행과 맞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은행이라는 용어를 전반적으로 신용조합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와 경영전략이 갖는 장점과 한계

협동조합은행도 개방적인 국제 경제 체제의 일부였기 때문에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조합원인 개인과 가계, 중소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협동조합은행도 파산하거나 국유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았다.⁷ 그것은 일부 협동조합은행들이 국제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는 했지만, 압도적으로 국내 지역사회에 밀착한 경영전략을 펼치고, 소매 금융 활동에 주력한 덕분이었다.

협동조합은행이 다른 상업은행들과 구별되는 특징이자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소유제라는 특수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조합원/고객을 핵심에 두고 경영한다.
- 일반적으로 자본화 비율이 높고 건전하다.
- 소매 금융에 초점을 두고 내부 예금 보장에 충실하다.
- 수익은 필요조건이며 최상의 목표가 아니다.
- 고객 접근성을 우선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조밀한 지점망을 가지고 있다.⁸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은행들이 금융 위기의 시기에 탄력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럽협동조합은행연합회’(European Association of Co-operative Banks, 2010)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은행의 경영상 장점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 있다.

⁷ 예컨대, 유럽에서 금융 위기 시기에 파산한 대형 은행들은 상업은행이거나 공공은행(독일의 란데스방켄 Landesbanken), 또는 과거 협동조합은행이었다가 상업은행으로 전환한 것들(영국의 Northern Rock와 Bradford & Bingley)이었다.

⁸ EACB, Op.cit p.8.

1) 지배 구조 자체가 안정성을 선호한다.

조합원 소유제(member ownership)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상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소매 금융에 치중한다. 협동조합은행의 1차적 임무는 주로 개인과 가계인 조합원/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행은 고위험을 피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협동조합은행들이 최근 국경을 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혀 왔지만, 이러한 확장은 그들의 핵심 가치와 규칙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어 왔다.

2) 협동조합은행 비즈니스 모델이 장점이다.

상품화된 신용을 판매하는데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전통적인 ‘중개자 역할’ 모델에 기반을 둔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은행은(파생상품 따위가 아니라) 실물경제에 봉사하고 있으며, 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협동조합은행의 내부 상호 보장 또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탄력성과 건전성을 보증한다. 그러한 보호 장치는 개별적인 지역 협동조합은행들 사이에서 어느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연계된 은행 망 속에서 예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건전성을 유지한다. 협동조합은행은 주민들에게는 물론 최근에는 국가에게도 금융 안전성과 접근성의 방파제로 인식되고 있다.

4) 협동조합은행의 탄력성은 금융 위기 이전과 위기 상황, 그리고 위기 이후에 나타난 강력한 금융 실적에 의해 설명된다. 그것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드러난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자본 비율, 수익성, 효율성 등이다.

위기 상황이 도래하기 전부터 유럽 협동조합은행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왔다. 이것은 협동조합은행들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경영 철학과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새로운 조합원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행들은 보수적인 위험관리(conservative risk management)와 보다

장기적인 관점(longer-time horizon views)을 채택함으로써 혼란의 시기에 방향 감각을 잃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해 왔다. 비록 예금 및 대출 시장점유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협동조합은행 고유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점들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U 6개국에서 협동조합은행은 전체 지점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협동조합은행들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지점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 첫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협동조합은행들은 자체 조직적으로 또는 다른 은행 지점들의 인수를 통해 지점들을 확장해 왔다. 둘째로, 협동조합은행들은 그 경쟁자들이 비용 절감 또는 효율성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점들을 축소할 것보다 덜 줄여 왔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은행들은 지역에서 더욱 강자가 된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은행 산업의 현실에서 고유의 중개 임무에 충실하게 보다 안정적인 은행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협동조합은행들은 ‘접근성’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여전히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업무를 도입한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행의 지배 구조와 경영전략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협동조합은행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징이자 한계점 때문에 상업은행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협동조합은행의 자본은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소유권자가 없는 세대 간 재산(intergenerational endowment without final owners)’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 재산은 더 증식해서 다음 세대 조합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명시적, 암묵적 동의 아래 현재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동조합은행의 경영진은 그 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유권이 희박한 기본재산’이 쌓여 있다는 사실은 조합원들에게는 효과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한편, 경영 과정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행에서 지배 구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두 가지 중요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경영진이 조합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세대 간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폐쇄적인 경영진과 직원들 안에서 재산의 일부를 횡령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⁹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위험성은, 협동조합은행들이 대형화하면서 일선 지역 신용조합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상실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요구와는 괴리된 경영 방침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영업에는 성공하나 협동조합성은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라보뱅크와 데잘댕(금융그룹, 은행): 크고 강한 협동조합은행들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19세기 말 농업 위기를 겪고 있던 네덜란드의 상업은행들은 소규모 가족농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할 수 없이 사금융에 의존해야 했다. 독일에서 라이파이젠은행의 성공을 목격한 농민들은 1896~98년 사이에 다양한 농민신협과 그 중앙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5년까지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를 가진 1,250개의 은행들이 설립되었고, 예금 분야에서 협동조합은행이 리더가 되었다. 이 은행들은 라이파이젠 원칙에 따라 설립되고 경영되었다. 그것은 (1)조합원의 무한책임 (2)지역사회로 제한된 영업 지역 (3)수수료 없는 운영 (4)잉여금의 내부 유보 (5)통합중앙은행에 대한 협력 등이었다.

1960년대부터 지역 은행들의 합병이 시작되고, 1972년에 남부와 북부를 대표하는 두 개의 중앙은행이 통합되어 라보뱅크(Rabobank)라는 거대 협동조합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합병 후 전국적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한 라보뱅크는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지점을 설치하고 농·식품 거래 분야에서

⁹ Wim Fonteyne, “Co-operative Banking in Europe: Policy Issue”(IMF Working Paper, 2007).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8년 현재 약 1,8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라보뱅크는 네덜란드 전체 대출 시장의 42%를 차지했고, 지방 회원 은행들의 예금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단순히 예금과 대출 업무로 시작된 네덜란드의 신용조합은 이제 보험회사와 자산 관리회사까지 보유한 국가의 기간 금융망으로 성장했다. 네덜란드에서 협동조합은행의 성공을 이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조합들의 이익과 전체로서의 중앙 조직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¹⁰

캐나다 퀘백의 ‘데잘댕’(금융그룹, 은행)

1867년 캐나다가 연방 국가로 출발했지만, 프랑스계 후예들이 살던 퀘백은 다른 주들에 비해 특별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자 퀘백은 언어(프랑스어)와 종교(가톨릭)가 다른 소수민족의 거주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영국계 자본이 침투하여 심한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새로운 세기로 접어든 1900년, 연방의회 서기였던 데잘댕은 퀘백시 부근 레비(levis) 지역에서 빈곤과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동포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의 신용조합 모델을 받아들여 ‘인민 금고’(caisses populaires) 운동을 시작했다.

퀘백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가톨릭 교구 신부들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주민들의 신뢰, 그리고 남편의 공무 출장으로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워 준 데잘댕 아내의 헌신적 활동에 힘입어 ‘데잘댕운동’은 초기의 난관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5달러의 조합비를 1년 동안 분할 납부하게 하고, 개인저축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비를 모아 안전한 은행에 예치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퀘백식 신탁은 자리를 잡아갔다. 국가

¹⁰ 라보뱅크에 관한 자료는 Rabobank International, <Cooperatives and Cooperative Banks: Their Contribution to Economic and Rural Development>(송재일 옮김,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2009 NHERI 리포트 제44호, 96~101쪽); Oliver Wyman, Cooperative Bank: Customer Champion(2008)(김유섭 옮김,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2010 NHERI 리포트 제109호, 4~6쪽); ILO,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박언희 옮김,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2009 NHERI 리포트 제84호, 12~13쪽) 참조.

와 상업은행 체계가 돌보지 않는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맞춤형 활동을 펼친 결과 운동은 퀘벡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웃 온타리오주와 심지어 미국 동부 지역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데잘댕’(금융그룹, 은행)은 1980년대부터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변화된 금융 활동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점들의 합병을 단행했다. 1996년에 1,205개였던 인민 금고 지점이 2009년에는 481개로 줄어들었다. 그것을 통해 하부 단위당 규모를 확대하여 경영 기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금융 기술과 사업 영역의 확장을 추진하였다. 20세기 초반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예금과 대출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퀘벡의 신용조합은 21세기 들어 첨단 금융 기법을 구사하는 대형 협동조합은행으로서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영역에서 20개의 자회사, 그리고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국제개발본부(DID)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데잘댕운동’은 지역투자자금과 사회연대기금의 구성에 앞장서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함으로써 협동조합금융 본래의 정신을 꾸준히 지켜 나가고 있다.

오늘날 ‘데잘댕’(금융그룹, 은행, Desjardins Financial Group)은 퀘벡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며, 캐나다는 물론 북미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은행이다.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데잘댕은 110년의 역사를 맞은 2010년에 가장 높은 흑자를 냈고 그 수익은 1조 4천억 원에 달했다. 캐나다에서 ‘올해의 은행’에 선정된 2010년 데잘댕그룹은 총자산 약 180조 원, 자기자본 비율(tire 1) 17.7%, 약 580만 명의 조합원(퀘벡 인구는 약 770만 명), 퀘벡과 온타리오에 451개 ‘인민금고’ 지점, 캐나다 전역에 42,500명이 넘는 직원, 그리고 약 5,900명의 선출 직원(officers)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¹¹⁾

¹¹⁾ Desjardins Financial Group, <2010 Annual Report>, pp.3~4.

5. 맺음말

협동조합은행은 자본주의 상업은행 체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들과 가게,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용이하게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각종 비영리단체 등을 비롯한 사회경제(social economy) 영역의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시초부터 협동조합은행은 사회적 책임성(responsibility)과 적극적 관여(commitment)를 특징으로 해 왔으며, 이 같은 특성은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협동조합금융은 소수의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해 단기적 관점에서 투기도 마다하지 않는 상업은행에 비해, 그들의 조합원과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해 왔다.

협동조합은행은 최근 들어 그 활동 폭을 전국적이고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사업 영역도 다각화하면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경제활동의 진흥이라는 고유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조합원 소유의 지배 구조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의 원칙에 충실할 때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농협’ 본래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국가권력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속에 거의 상업은행처럼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농협은행, 그리고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국의 신협이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가치일 것이다.

협동조합금융이 건전하게 살아야 다른 부문의 협동조합들도 그만큼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살아남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농축산물 구매자들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항하여 설립된 농협

생산자협동조합은 농민, 어민, 임업인 등 재화나 서비스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제주체들이 판매 및 가공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이다. 본 고에서는 주로 농업협동조합에 한정하여 농협이 왜 설립되었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9세기 중반 유럽과 미국은 치즈 등 유가공부문에서 농협이 가장 먼저 탄생하여 여러 농축산물과 기능 등으로 확산되었다. 초창기 농협의 이러한 확산은 독과점 등 시장제도의 취약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산지에서 농민들이 판매하는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수집상들이나 도축 및 가공업자들은 주로 독과점기업들이었다. 독과점기업들은 부당한 가격과 중량의 속임 등을 통하여 농민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농축산물 구매자들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농협을 조직화한 것이다. 이러한 농협은 20세기 초반에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정립되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로 하는 전국적인 대변조직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협은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낙농부문에서 농협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80%에 달하였고 덴마크의 양돈부문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하였다. 미국의 전체적인 농축산물판매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대 말에 32% 수준에 달하였다.

오늘날 농업협동조합은 2차 및 3차 산업의 발전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업비중의 감소로 그 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여전히 중요한 기업형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농협은 신흥과 소

비자협동조합과는 달리 개발도상국가에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농협은 선진국의 설립 배경과는 달리 대부분 식민지시대에 제국 주위의 농업개발의 수단 혹은 정치적 지배의 목적으로 하향식으로 설립된 배경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하향식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은 탈식민지화 이후 개발연대라고 일컬어지는 1960~70년대에 개발독재정권들에 의해서도 강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농협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농협의 대응

1980~90년대 이후 농협의 내외적 환경은 그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농업보호 또는 지원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협의 시장여건은 과거와는 달리 크게 불안정해졌다. 특히 무역장벽이 대폭 축소되어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농협은 그동안 추구해온 생산 중심 및 비용최소화 전략에서 수요 중심 및 부가가치 제고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둘째,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는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제품 차별화를 둘러싼 가공기업 간 또는 소매유통체인 간 경쟁으로 진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제품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생명공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농협이 이러한 식품공급 체인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자본의 조달문제와 투자유인 및 투자성공률이 점차 농협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규모 확대에 인하여 조합원 구성의 이질성이 점차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의 부족문제로 농협의 활력과 지속적 성장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존 농협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왔다. 첫째, 규모화의 이익을 도모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합병은 대부분 1차 농협들 간에 추진되

있고 합병을 통하여 규모화된 1차 농협의 탄생으로 중간단위의 연합조직들은 해산하거나 흡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품목농협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유럽의 대표적인 농협인 덴마크의 돼지도축·가공·판매협동조합은 1945년에 1백여 개로 증가한 이후에 2002년에 단지 2개의 조합으로 합병되었다. 이 중에서 데니쉬 크라운(Danish Crown)은 2005년 현재 전체 양돈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데니쉬 크라운의 조합원은 1만2천 여 명의 양돈농가와 9천 여 명의 비육우농가 등 총 2만1천 여 명에 달하고 직원은 2만3천 명에 달하였다. 네덜란드의 원예협동조합도 경매조합이 주요한 형태였던 1915년에 127개에서 1996년에 12개로 합병되었고, 1998년에 이 12개 조합이 판매협동조합인 브티엔/그리너리(VTN/Greenery)로 합병되었다. 반면에 종합농협이나 구매농협의 경우 연합조직으로 사업이 집중화하고 1차 농협은 연합조직의 지점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대규모화된 1차 농협이나 대규모 연합조직들의 노력이 점차 확산되었다. 유럽과 북미에서 우선주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거나 우선주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외부 자본을 조달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부 자본과 우수한 경영자를 확보하려는 대규모 농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농협도 관찰되고 있다.

일부 농협의 실패와 시련, 그리고 새로운 농협조직형태의 등장

기존 농협의 대규모화 추구와 자본조달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노력은 일부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00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농협이자 가장 유명한 농협들이 파산하거나 투자자소유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에서는 중서부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연합농협이자 미국농협에서 1위의 사업규모를 자랑하던 팜랜드(Farmland)가 2002년에 파산하여 매각되었으며, 같은 해에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연합농협이자 미국농협에서 10위의 사업규모를 지녔던 에기웨이(AgWay)도 파산하여 매각되었다. 주로 곡물의 수집과 판매, 농자재의 구매를 위한 연합회기능을

담당하였던 팜랜드의 자산규모는 파산하기 전에 33억 달러, 매출액은 122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국 서부에서는 대표적인 미곡가공 및 판매농협이었던 라이스그로어즈어소시에이션(Rice Growers Association)과 대표적인 토마토 및 복숭아가공 및 판매농협이었던 트라이밸리그로어즈(Tri Valley Growers) 등이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파산하였다. 라이스그로어즈어소시에이션은 파산 전까지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지역의 대표적인 농협으로 1980년대 초에는 캘리포니아 미곡의 80%를 처리할 정도였다. 미국농협의 시련은 남부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농협이자 계육산업의 핵심 리더였던 골드키스트(Gold Kist)가 2004년 10월에 공개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2006년 12월에는 미국 2위의 계육기업인 필그림즈 프라이드(Pilgrim's Pride)에 인수합병되었다. 약 2천여 육계농가들로 구성된 필그림즈 프라이드는 매출규모가 21억 달러에 달하여 7~8위로 큰 농협이었다.

캐나다에서는 매니토바주와 알버타주의 대표적인 다목적 곡물농협이었던 에그리코어 유나이티드 (Agricore United)가 2002년에 공개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사스캐치완주의 대표적인 다목적 곡물농협이었던 사스캐치완 wheat 풀(Saskatchewan Wheat Pool)이 1996년에 출자증권의 일부를 주식시장으로 상장하더니, 그리코어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이후 완전히 공개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명칭도 비테라(Viterra)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대규모농협의 파산 등으로 서유럽과 북미농협에게 1990년대는 시련과 구조적 전환의 시기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농산물 판매시장이나 농자재 구매시장에서 농협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대 후반이후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으며, 캐나다 농협의 시장점유율은 1986~2003년 동안 현저히 낮아졌다. 일례로 낙농은 61%에서 39%로, 곡물과 유지용작물은 70%에서 22%로, 과일과 채소는 15%에서 8%로, 비료와 농약은 31%에서 21%로, 사료는 26%에서 14%로, 종자는 23%에서 6%로 감소하였다.

호주에서는 데어리 밸류 푸즈(Dairy Value Foods), 파머스 그라즈코스 코퍼러티브즈(Famers Grazcos Cooperatives)가 각각 1995년과 1987년에 투자자소

유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가장 큰 축산협동조합이었던 아프코(Affco)가 1995년에 투자자소유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도네갈(Donegal)이 1989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1997년에 상장되었으며, 골든 베일(Golden Vale)이 1990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상장되었고, 2001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되었다. 영국에서는 우유마케팅보드의 가공기능을 담당하였던 데어리 크레스트(Dairy Crest)가 1996년에 민영화되어 상장되었다.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1980년 이후부터 기존 농협을 탈퇴하고 신세대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1980년대 초 10여 개에서 2003년에 147개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Fulton 외, 2006) 신세대협동조합은 소유와 이용 관련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 농협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한된 지역 내에 동질성이 강한 농민들이 고부가가치사업을 추구하는 소규모 농협이라는 점에서 기존 농협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출자증권의 거래, 출하권과 출자의무의 비례적 연계 등을 특징으로 한 ‘비례형 지분거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례형 지분거래 협동조합적 모형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의 일부 농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농협의 소유와 이용관계를 특징화하는 조직모형은 전통적 모형, 외부투자자의 지분참여가 허용되는 농협 및 자회사보유농협, 비례형 지분거래농협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농협이 진화하게 된 내적 원인

농협은 농민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조직적 대응의 한 형태이고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농협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농협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농협조직형태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협동조합의 조직운영 비용에는 의사결정비용, 대리인비용, 자본조달 및 투자비용, 무임승차비용 등이 포함 된다.

대리인비용은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더 넓게는 과업의 위임관계가 존재하

는 모든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이러한 대리인비용을 줄이는 기제가 다르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가치가 시장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가치에 경영자대리인의 업적평가 및 보수를 연계시킴으로써 기업의 가치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리인의 행동 욕구를 자제시킬 수 있다. 반면에 협동조합의 출자증권의 가치는 시장에 의하여 평가되는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monitoring)체제를 통하여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 및 경영이 복잡해지게 되면 이러한 직접적인 감독체제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

농협의 경영자대리인 비용수준은 조합원의 직접적인 감독체제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적인 감독체제가 효과적인 이유는 조합원이 조합과 직접 거래를 통하여 조합의 사업과 경영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잘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의 구성이 이질적일수록, 그리고 농협의 사업이 보다 다각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조합원의 직접적인 감독체제의 효과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투자자소유기업이나 농협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계약을 통한 사업체라는 점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수반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집단적 의사결정비용과 관련하여 농협은 투자자소유기업과 다른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투자자소유기업과 달리 조합원이 소유자임과 동시에 이용자라는 점에서 농협의 사업전략 및 방법에 관하여 투자자소유기업의 소유자보다 조합원이 훨씬 높은 관심이 있다. 그리하여 이의 결정을 둘러싸고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주식회사는 주식보유의 제약이 거의 없고 의결권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더라도 의사결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제가 있는 반면, 협동조합은 의결권의 평등주의를 고수하는 경향이 높다.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의 함의 측면에서 농협과 투자자소유기업과의 차이점들로 인하여 농민조합원의 농협소유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

다. 농협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비용은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동질적일수록 낮아진다. 그 이유는 조합원들이 조합취급품목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농협이 여러 품목을 취급할 경우, 위험의 분산과 공동 판매를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수입과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찾기 어려워 조합 내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조합원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경작규모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농협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equal treatment)에 의해서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들의 경작규모의 차이가 커지면 조합의 사업을 대량거래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가치 부가활동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조합 사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럽과 미국의 판매 및 가공농협이 대부분 단일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패성이 높거나 등급화가 어려운 과일이나 채소품목보다는 부패성이 약한 과일이나 등급화가 쉬운 과일품목 등에서 농협이 더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농협의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자기자본 조달은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고 출자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포트폴리오 문제(portfolio problem), 기간의 문제(horizon problem), 무임승차자 문제 등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투자유인이 높지 않게 된다. 이의 결과로 조합은 예상수익이 높은 투자기회가 있음에도 자본제약 때문에 이러한 투자기회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문제와 기간의 문제는 농민조합원들이 농장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요구받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직면할 때, 그리고 노령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보다 심각해진다. 이의 결과로 조합원들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높이려고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투자에 필요한 출자는 기피하려고 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심각해진다.

위에서 살펴본 농협의 소유비용은 농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농협이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농협 재조직화의 두 가지 길

어떠한 조직형태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내적인 운동의 원리에 따라 진화가 불가피하다. 농협은 여러 단계로 진화하게 된다. 즉, 농협은 설립단계, 초기단계의 생존문제의 해결단계, 성장과 합병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퇴출(exit)이나 구조개혁(restructuring)의 단계에 직면하게 된다. 농협이 성장과 합병의 단계에서 앞장에서 서술한 각종 소유비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퇴출이나 구조 개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농협의 재조직화(reorganization)는 크게 탈조합화(demutualization)와 협동조합 틀 내에서의 재조직화로 나누어진다.(<표 1> 참조) 탈조합화는 해산 또는 파산을 통한 매각, 그리고 투자자소유기업 전환 등으로 나누어진다. 협동조합 틀 내에서의 재조직화는 협동조합 간 합병, 인수,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와 투자자소유기업 형태의 자회사 설립, 그리고 협동조합 내부조직구조의 혁신 등으로 나누어진다.

<표 1> 농협 재조직화의 유형

탈조합화	해산 또는 파산을 통한 매각
	투자자소유기업으로의 전환 및 상장
협동조합 틀 내에서의 재조직화	협동조합 간 합병
	협동조합 간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투자자소유기업과의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투자자소유기업형태의 자회사 설립
	협동조합 내부조직구조의 혁신

1) 탈조합화

탈조합화는 해산 및 파산 등을 통한 매각과 투자자소유기업으로 전환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피동적인 것이고, 후자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조합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에서 많이 발견되어 왔다. 이러한 탈조합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과 캐나다의 탈조합화 사례에 대한 현재까지의 분석결과, 재무적인 실패, 추가자본의 획득 혹은 조합원의 자본이득 추구를 위한 농협의 시장가치에 대한 접근성의 획득, 그리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시장대처 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 농협의 파산 혹은 주식회사로의 전환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이유들 중에는 모든 기업조직형태에 공통되는 요소, 예를 들면 경영진의 판단 오류 등도 있고, 협동조합의 고유한 조직적 특성에 기인한 요소, 예를 들면 농협 출자증권의 거래시장의 부재 등도 있다.

캐나다의 가장 큰 농협이었던 사스캐치완횃풀의 실패사례를 설명해보자. 이 실패 사례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진의 자만(overconfidence)이었다. 출자증권의 일부 상장을 통하여 엄청난 금액의 자금 여유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경영진은 사스캐치완횃풀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구조, 경쟁자의 반응, 투자과잉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투자프로젝트의 장밋빛 모습만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부문에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윤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문에서 선점의 논리를 내세워 경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조합원의 이익과 큰 관련 없는 사업부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면서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조합의 사업부문이 다양해지고, 점점 조합 농장과 관련성이 더 멀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조합사업과 경영에 대한 조합원 이사들의 효과적인 감독

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이 사스캐치완헛풀의 경영실패를 초래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이다. 사스캐치완헛풀이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조합원들의 조합 이용 기피에서 찾을 수 있다. 1993년과 2003년 동안 사스캐치완헛풀의 곡물수집 및 판매 점유율은 61%에서 33%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렇게 농민조합원의 조합 이용율이 낮아진 것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의 이익 추구가 조합원의 이익 향상과 점점 무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왜 사스캐치완헛풀이 엄청난 자금을 차입하여 곡물과 무관한 사업에 확장하는지에 대하여 불신하게 된 것이다. 조합 사업과 경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이 조합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출자증권 B의 상장과 관련되어 있다. 1996년 출자증권 B의 상장 이후에는 농협의 현안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이 중지되었다고 한다. 조합 이사회와 조합원 간의 소통부재는 또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¹

결론적으로 사스캐치완헛풀의 실패는 투자실패였고, 이는 경영진의 실패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경영진의 실패를 초래한 핵심적인 요소는 세 가지이다. 첫째, 출자증권을 A와 B로 분리한 것은 소유권과 통제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조합원이나 투자자 모두 경영진을 감독할 유인을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출자증권의 일부 상장으로 경영진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자만심은 더욱 배가되었다. 셋째, 조합원 중심의 이사회는 엄청난 투자와 인수의 갑작스런 결정을 합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규모농협이 파산하게 된 원인은 조합원과

¹ 출자증권의 일부 상장은 사스캐치완헛풀의 거버넌스를 변화시켰다. 당초 이사회는 16명의 조합원 이사들로 구성되어었는데 출자증권 B의 상장은 14명의 조합원 이사와 2명의 외부 이사로 변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에는 조합원 이사의 수를 14명에서 10명으로 줄였으며, 2003년에 채권자은행들의 요구로 외부 이사 수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05년에 출자증권 B의 거래량 한도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서 사스캐치완헛풀은 캐나다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총 12명의 이사 중 농민조합원대표는 4명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경영책임자(CEO)와 대주주가 지명한 7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었다. 즉, 사스캐치완헛풀은 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 아니게 된 것이다.

조합과의 경제적 연계성의 약화, 조합 운영 투명성의 결여, 농협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결여로 요약된다.

2) 협동조합 틀 내에서의 재조직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지 여부는 협동조합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재조직화에 내재적인 제약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농협에서 협동조합 틀 내에서의 재조직화는 다른 조직과의 조직적 협력과 농협의 내부조직구조 개편으로 구분된다. 다른 조직과의 조직적 협력은 신설 합병과 인수(흡수) 합병,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등이다. 미국 외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 농협 간 합병은 가장 일반적인 농협의 재조직화 유형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농협 내부 조직구조의 개편은 소유권의 혁신, 지배구조의 혁신, 그리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 관계의 혁신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농협에서는 출자증권은 재평가되지도 않고 거래되지도 않지만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일부 농협과 미국의 신세대협동조합 등에서 출자증권은 재평가되고 조합 내부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에서 일부 농협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일부 농협에서는 기관 투자자를 특수한 소유자로 영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많은 나라의 농협에서 우선주를 발행하여 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천적 사례들은 전통적인 농협의 자본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의 지배구조 혁신과 거래관계의 혁신 중에서 대표적인 원리는 형평 및 비례원리의 도입이다. 1인1표에서 출자액이나 이용고에 비례하여 다수투표권을 부여한다든지, 조합의 비용배분이나 가격설정 시에 형평성이나 조합원의 구매 혹은 판매물량의 다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협의 조직모형을 평등원칙에 기초한 전통적인 조직모형에 대하여 비례형 조직모형으로 지

칭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비례형 조직모형의 특징을 전통적인 조직모형과 비교한 것이다. 비례형 조직모형은 지배구조, 금융관계, 사업관계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조직모형과 큰 차이가 있다.

<표 2> 전통적 판매농협과 비례형 판매농협의 조직구조 비교

	전통적 판매농협	비례형 판매농협
금융관계 (소유)	-소유자는 조합원에 한정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최소한 금액의 신규가입 출자금 -조합 성장에 필요한 자본은 내부유보 혹은 조합원 적립금을 통해 조달 -출자증권의 비가격 및 비거래 -출자금의 상환제도	-조합원과 제한된 수의 비조합원 -조합이용고에 비례한 출자납입의무 -신규조합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출자의무 등 조건부 조합원가입제도 -조합 성장에 필요한 자본은 내부 유보와 기본자본 계획을 통해 조달 -출자증권의 비가격 및 거래제도 -출자금의 상환제도
지배구조 관계 (관리)	-관리주체는 조합원에 한정 -1조합원 1투표 -이사회구성원은 조합원에 한정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의한 의사결정	-조합원, 제한된 수의 투자조합원, 제3자 -이용고에 비례한 다수투표권 허용 -이사회에 외부전문가 혹은 외부투자자 참여 허용 -의사결정, 경영자 통제, 경영 집행의 분리
거래관계 (이익)	-비조합원거래에 대한 제한 -이용고에 기초한 잉여의 배분 -평균적 혹은 평등한 가격정책 -조합원농축산물의 무조건 수탁 혹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공급량의 무제한적 허용 -조합과 조합원간의 공식적 공급계약의 부재	-조합사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조합원 거래 도입 -이용고에 비례한 잉여의 배분 -형평적 혹은 차별적 가격정책 -조합원 농축산물의 조합공급량에 대한 사전 결정 -조합원공급 농축산물의 수량과 품질 요건을 규정한 공식적 계약의 도입

오늘날 농협의 존재이유로서 거래비용 절감

이렇게 내적인 구조를 개혁하면 농협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소유비용뿐만 아니라 농협의 존립이유에

대하여 천착할 필요가 있다. 1세기 이전에 농협이 독과점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면 오늘날 농협은 주식회사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필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농협이 독과점문제 외에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협의 소유자가 농민조합원이기 때문에 농협은 조합원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정보를 서로 잘 공유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고, 조합을 통하여 위험의 공동화를 통한 위험 축소 기능을 수행하며, 개별농민들의 시장개척비용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가설들은 농식품 제품의 차별화를 촉진시키는 세계화와 생명공학기술혁명시대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정 영양성분을 부각시키거나 식품의 안전성이나 동물복지, 친환경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등 차별화의 차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거래비용 절감 가설에 따르면, 농협은 가공 및 판매단계와 생산단계의 경제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인이 높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보다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을 통한 거래방식이, 주식회사형태의 농식품 가공 및 판매기업과 원료농축산물 생산자와의 시장을 통한 거래방식에 비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차별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덴마크의 대규모 돈육협동조합인 데니쉬크라운(Danish Crown)이 일부 제품의 차별화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자. 데니쉬크라운은 시장에서 돈육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화 되면서 돼지의 사육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해 빚어진 조합원의 이질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데니쉬크라운은 영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동물복지 및 식품안전성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돼지의 생산이나, 독일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큰 중량의 돼지 생산을 전담하는 일부 조합원과 명시적인 생산 및 출하계약을 도입하여 그 조합원들이 특정적인 자산(예, 종돈 및 사양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개별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특수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 개척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농협의 특수성

우리나라 농협은 어떠한가? 우리 농협의 역사를 서술하기보다는 우리 농협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서술하고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농협은 서구의 농협과는 달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체제를 기본 특징으로 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겸영에는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겠지만 전문화가 필요하고 자금조달이 보다 쉬워진 오늘날엔 단점이 커지기 때문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조직적 분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둘째,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비협동조합적 신용사업을 큰 부문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협의 역사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은행 금융사업을 조합의 상호금융사업과 분리하여 협동조합은행으로서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농협은 서구 농협과 다른 제도와 환경에서 발전해왔다. 하향식 성장과정, 광범위한 법적·정책적 규제, 개별 계약문화보다는 집단적이고 암묵적인 계약문화의 우위성 등은 분명히 서구 농협과는 다른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통제형 농협에서 조합원에 의한 농협으로 전환하는 것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질적으로 퇴행해온 우리나라 농협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역사: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로저 리차드슨 (영국 원체스터대학 명예교수)

1960년, 1961년 그리고 1962년 여름, 3차례 기나긴 여름방학 동안 나는 고향인 랭커셔주(Lancashire) 미들톤(Middleton)에 있는 지역 협동조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미들톤은 1844년 선구자들이 최초로 협동조합 매장을 만든 로치데일(Rochdale)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며, 동시에 1863년 영국도매협동조합(CWS: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이 탄생한 맨체스터(Manchester)에 인접해있다. 내가 청소년기를 보내던 시기에 미들톤은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엄밀히 따지면 미들톤-톤지 산업협동조합(Middleton & Tonge Industrial Co-operative Society)의 활발한 활동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명칭은 어크(Irk)강을 경계로 나뉜 미들톤과 톤지라는 두 마을에 물품을 공급한다는 의미이다. 이 협동조합은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 시작되고 오래 되지 않은 1850년에 설립되었다. 나의 기억으론 대학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들톤에서 이 협동조합은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미들톤은 다른 곳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이었으며 면직물 산업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다. 세계 1차 대전 발발 이전부터 거대한 면직물 공장들이 이 지역의 풍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이 공장들에서 방직 일을 했다. 그들 중 일부는 뛰어난 품질의 벨벳을 생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그들은 레이온과 나일론 같은 수작업 직물을 면과 섞어서 다른 제품을 만들기도 했다. 방직 공장들은 만들어진 옷감에 염색하고 무늬 넣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들과 연계하고 있었고, 이들 공장 중 한 두 개는 옷을 만들었다. 영국도매협동조합(CWS)은 미들톤에

공장 3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잼과 마멀레이드를 생산하는 공장이었고, 또 다른 공장에서는 식초와 피클을 생산했다. 세 번째 공장에서는 과일 음료와 탄산음료를 생산했다. 나의 가족들은 이 세 개의 공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 공장에서 불어오는 각기 다른 냄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들톤에는 두 개의 작은 기차역이 있었고 맨체스터처럼 인접 지역으로 이동 가능한 버스가 있었다. 그 곳에는 중세풍의 지역 교회와 1572년에 세워진,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래머 스쿨¹이 있었다. 미들톤 시민들은 비국교도를 위한 교회(특히 감리교파 중심), 꽤 훌륭한 공공도서관, 3개의 영화관, 그리고 스포츠(특히 크리켓), 드라마, 음악, 미술, 정원 가꾸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름의 지역 문화를 꽃 피웠다.

미들톤에는 주목할 만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지역에서 잘 알려진 20세기 건축가 애드가 우드(Edgar Wood)의 작품이다. 마을에는 미들톤 가디언(Middleton Guardian)이라는 이름의 지역신문이 있다. 지역신문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족관계와 혈족간의 결혼(intermarriage)을 강화시켜 지역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진 노동자 계급이 지배적인 지역 분위기를 형성했다. 협동조합은 이를 돕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맨체스터 지역의 과잉 인구 중 일부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맨체스터 외곽의 광대한 부지(미들톤)에 주택 공사가 시작된 1950년대 후반부터는 이 모든 것이 도전을 받고 결국엔 약화되었다. 이주민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수용하는 마을 사람들의 대처 방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문화 유지에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1960년대 협동조합은 미들톤 시내 중심가에서 가장 중요했다. 구시장(old market)의 한 쪽이 거의 다양한 협동조합 매장들로 이뤄져 있었다. 미들톤에 최초로 들어선 식료품 상점도 그 곳에 위치했다. 식품을 판매하는 다른 소매점들은 여전히 예전의 카운터 서비스를

¹ 영국의 grammar school은 주로 대학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이 가는 중·고등학교로,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지원을 통해서 진학하는 일반 공립학교의 졸업생 중 일부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과 비교된다.(역자 주)

이용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하려면 카운터 앞에 긴 줄을 설 수밖에 없었다. 미들톤 시내 중심에 협동조합 생선가게와 정육점이 분리되어 설립되어 있었으며, 제과점, 협동조합약국, 협동조합 신발가게가 있었다. 이들 보다 더 큰 규모의 2층 건물이 한 블록 떨어진 또 다른 거리에 세워졌다. 남녀 의류매장과 가구를 비롯해 카펫, 러그를 함께 판매하는 매장이 들어섰다. 상점들이 일렬로 늘어선 거리 뒤편에는 협동조합 사무실들과 장례협동조합이 있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다. 같은 거리에 유제품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조합은 매일 마을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집에 유제품을 배달했다. 식품 창고는 바로 옆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편리하게도 미들톤 기차역은 석탄판매점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미들톤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석탄을 사용해서 벽난로를 지폈다.

미들톤에는 협동조합은행이 없었다. 협동조합은행의 본사는 면직물 산업의 중심 도시인 맨체스터에 있었다. 협동조합보험조합(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역시 맨체스터에 본사를 두었는데 정기적으로 미들톤의 각 가정을 방문해 보험료를 받거나 요청에 따른 납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미들톤에 지사를 두었다.(나의 삼촌 중 한 명이 그 곳에 근무했다)

중심 상점가의 위쪽에는 널찍한 협동조합회관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대중강연과 모임, 볼룸댄스, 패션쇼, 파티, 다양한 공연들이 열렸고, 미들톤 국화조합(Middleton Chrysanthemum)이 해마다 주최하는 행사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열리곤 했다. 회관에는 케이터링 서비스 조합이 들어와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서 열리든지 결혼식, 장례식 그 밖의 특별한 행사에 필요한 샌드위치, 맛있는 간식거리들, 케이크 등을 출장 공급하곤 했다.

나는 어렸을 때 해마다 여성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s Women's Guild)의 주최로 회관에서 열리는 어린이 행사에 참석하곤 했다. 나의 어머니는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숙모 중 두 분은 매우 활동적인 여성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며, 각기 다른 시기에 회장직까지 맡았다. 숙모 중 한 분은 미들톤-톤지 협동조합 경영진의 선출 임원이었다. 숙모는 식료품 매장의 담당 매니저

에게 나를 추천해주었고 덕분에 나는 여름 단기아르바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미들톤-톤지 협동조합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다양한 상점과 시설 외에 17개 혹은 18개의 식료품 매장을 마을 곳곳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수이긴 했지만 각 매장마다 개별 매니저와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당시의 매장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슈퍼마켓 형태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매장은 동일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통일된 인테리어를 했으며, 여전히 전통적인 건축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외양은 간소하고 검소한 모습을 띄었다. 예를 들면, 목재 바닥이 기본이었다. 고객들은 목재로 된 카운터 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하나 혹은 두 개의 의자가 있어서 고령의 고객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었다. 베이컨, 조리된 고기나 치즈 같은 식품들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직접 그 자리에서 썰어서 필요한 양만큼 제공됐고, 버터의 경우 판매 당일에 미리 포장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매장에는 냉장기능을 갖춘 진열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식품들은 매장 뒤편에 있는 커다란 냉장고에 보관했다. 냉동식품은 거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과일과 채소는 미리 포장해두지 않고 커다란 통이나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가 무게에 따라 판매하였다. 전분이나, 오늘날 거의 보기 어려운 냄새가 강한 가정용 석탄산비누와 같은 제품들은 재고품을 쌓아놓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 덕에 잘 팔려나갔다. 고객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여전히 가정용품 구입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침입할 수 없는 여성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 협동조합의 주요 고객들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보유한 출자 조합원으로 고유의 조합원번호가 있었다. 조합원이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이 조합원 번호를 알려줘야 했고, 손으로 쓴 영수증을 발행할 때에는 조합원 번호와 구매 금액을 기재하였다. 이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회계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전국의 다른 협동조합 매장에서든 같은 조합원 번호로 상품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주 거주지가 아닌 외부 매장에서 구입한 가격도 그 조합원의 연간 구매 합계에 추가해야만 했다. 따라서 회계 방법이 더욱 복잡했다.

이러한 총계를 바탕으로, 1년에 두 번씩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했는데, 협동조합 재무 부서에 가서 받을 수 있었다. 5%의 이윤이 지급됐다.(1971년 영국에서 십진법 통화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1파운드당 1실링을 받았다.²⁾) 나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소중한 ‘배당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섰던 기억이 있다. 나중에 내가 미들튼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야 비로소 이 오래된 현금 배당 시스템 대신 편리한 교환 스탬프(trading stamp) 제도가 도입되었다.

교환 스탬프는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종이나 소책자에 붙여 보관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구매한 상품에 대해 현금 대신 교환 스탬프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유회사 같은 다른 소매업체들이 시행하는 사은품제도를 협동조합에서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로열티(충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행한 배당금 제도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역 협동조합에서 한 나의 여름 단기 아르바이트는 항상 식료품 매장이었다. 두 번은 지점 매장이었고, 마지막 아르바이트는 마을 중심에 있는 슈퍼마켓이었다.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직원인 나는 주로 고객 응대보다는 상품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중앙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들은 지정된 날짜에 개별 상점으로 배달되었는데, 그때 나는 배달된 물건을 화물차에서 내리는 일을 도와야 했고, 매장의 뒤편이나 매장의 위쪽에 있는 창고에 물품 상자들을 가져다 보관하는 것을 도와야 했다.

감자나 다른 뿌리 채소들은 대량으로 배달되어 왔다. 그 무거운 자루들을 밀어서 나르거나 도르래를 이용해 위편에 있는 창고에 끌어올려 놓았다가, 필요할 때면 미끄럼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매장 안 커다란 금속 통 안으로 내

² 1실링(shilling)은 영국에서 1971년까지 사용한 주화로 지금의 5펜스에 해당한다.(역자 주)

려 보냈다.(이것은 십대 소년에게는 매우 피곤하고 지저분한 일이었다. 나는 배달 차량에서 베이컨 살덩이들을 매장 안으로 옮겨야 했다!) 주문이 들어오면 큰 통들에 담겨 있던 상품을 꺼내 커다란 금속 저울에 무게를 달아 고객에게 넘겨주면 고객들은 자신들의 쇼핑백이나 바구니에 담아 가져갔다. 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무료로 일회용 비닐 쇼핑 봉지를 제공했으며 다른 매장들은 훨씬 뒤에야 이러한 쇼핑백을 제공했다. 협동조합은 트렌드를 빠르게 선점하고 이를 활용했다.

나는 다른 업무도 3가지를 했다. 그 중 하나는 통조림이나 포장된 상품들을 진열선반에 정리하는 일이다. 슈퍼마켓과는 반대로 그 협동조합 매장의 진열선반들은 모두 카운터 뒤에 있었다. 때로 이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천장에까지 제품들을 쌓아 올려놓았다. 특별 할인 상품들을 카운터 한 편에 쌓아놓거나 고객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였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 매장 광고는 크게 신경 쓸 수 없는 분야이고 상품 진열도 창피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정도로 작은 매장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쓸고, 닦고, 대걸레질하고, 솔로 문질러 씻는 일까지 상당히 많은 청소 일을 내가 해야 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 크고 부담스러운 업무가 주어졌다. 그것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들을 재생 마분지로 된 배달상자 안에 넣어 포장하는 일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식이었다. 각 협동조합 매장에서는 지정된 배송날짜가 있었다. 조합원인 고객들은 돌아오는 주의 지정된 날 주문물품을 받기 위해 2~3일 이전에 조합원 번호가 기재된 주문용지에 원하는 상품 품목을 적어 제출했다. 그러면 나는 주문용지를 확인하고 진열 선반으로 가서 조합원들이 주문한 통조림 상품, 혹은 포장 상품, 병에 들어 있는 상품들을 가져다 적절한 크기의 마분지 상자들에 넣어 솜씨 좋게 포장해야 했다.

감자나 양파와 같이 포장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던 채소들은 상자 바닥에 담았다. 부패하기 쉬운 식품이나 포장된 베이컨, 조리된 고기와 치즈는, 반드시 배송 직전에 포장해야 했다. 만약 재고가 없는 물품이 주문될 경우에는 동

종의 대체상품으로 공급했다. 전문화 된 유명 브랜드의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영국도매협동조합(CWS)이 공급하는 제품들을 늘 일순위로 공급하였다. 주문된 제품들 각각의 가격을 주문용지에 기재하고, 전체 가격도 함께 기재해 넣었다. 약간의 배송비가 영수증에 함께 청구되었다. 이러한 과정 전부를 매장의 매니저 혹은 매니저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확인받았고 거래장부에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이 제출한 주문용지를 주문 상품들을 담은 마분지 상자의 맨 위에 올려놓았다.

고객들은 주문한 물품을 배달받았을 때 대금을 지불했는데, 이때 지불은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했다. 당시에 신용카드는 당연히 없었고 내 경험에 따르면 노동자들 대부분은 수표도 사용하지 않았다. 갑자기 많은 주문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무언의 규칙은 다음 주 주문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지난 주 주문 대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들튼-톤지 협동조합의 배송은 당시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조직되었다. 배송 직원은 각각의 협동조합 매장을 이동하면서 협동조합 매장마다 고유 배송 날짜에 물건을 수집해서 배달해야 했다.

협동조합의 배달시스템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배달은 협동조합의 전통적인 가치와 양심을 표현했다. 협동조합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은 누구도 거드름을 피우거나 잘난 척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지역 소매 거래업의 엘리트라고 생각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더 크고 더욱 복잡한-미들튼과 인접한 대도시인-맨체스터 매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복장 규정은 엄격했다. 시내 중심에 있는 협동조합의 특정 매장 직원들은 항상 깔끔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생선가게와 정육점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남자 매니저를 비롯한 모든 매장 직원들이 정장과 넥타이 착용을 해야 했다. 생선가게와 정육점에서 넥타이만큼은 품위의 기본 표식으로 여겨 모든 남자 직원이 착용하도록 했다.

식료품 매장에서조차 역시 남자 직원들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밝은 색의 자켓

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거나 긴 흰색 옷³을 자랑스레 입었다. 기름진 베이컨과 감자가 담긴 자루를 묶고 옮기는 등의 작업으로 옷이 금방 더러워졌음에도 나 역시 이런 종류의 옷을 입었다.

여름 방학 동안 협동조합 매장에서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나는 계속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대신 휴가를 간 정규직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다.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직원들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었기에 어떤 점에서는 좋았다. 또한 새로운 업무를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경험은 협동조합에 관한 학습 곡선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높여주었다. 각각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나 스스로 매장마다 서로 다른 구조와 체제에 빨리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처음 일했던 여름에 근무한 협동조합은 옛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이었다. 이후 두 번의 여름방학에 나는 몇 주 동안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식료품 매장과 그 지점에서 근무했다. 오늘날의 기준에 따르면 이 매장들은 소규모였으며 이후에 표준이 되기 시작한 쇼핑 카트도 없었다. 쇼핑카트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매장 가까이에 주차할 만 한 장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쇼핑까지 모두 하는 것은 어렵다. 분주한 매장에서 정리가 필요한 선반들이 늘어나 나는 업무를 쉴 수 없었지만, 업무 경험이 쌓이자 청과물 부서나 베이컨, 햄, 조리된 고기, 치즈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허락받았다.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고객의 대다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학교친구, 선생님, 그리고 나와 가족들이 다녔던 지역 교회의 사람들이었다. 나는 보통 주당 40~45시간을 근무했으며, 중심가의 식료품 슈퍼마켓에서 근무할 때는 가끔 초과 근무를 하기도 했다. 작고 옛날 방식으로 꾸려지던 매장에서 일하고 받았던 내 첫 임금은 주당 5파운드 아래였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아

³ 위생복(역자 주)

주 적은 금액이지만 당시에 처음으로 일하고 받은 돈으로는 충분했다. 어쨌든 나는 이 돈이 충분한지 어떤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없었다. 3~4년 후, 좀 더 야심을 갖게 되었을 때 나는 여름 기간 동안 임시 중등 교사로 근무하고, 주급으로 22.5 파운드를 받았다. 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다!⁴

1960년대 후반부터 나는 영국 남부에 거주하면서 대학에 근무했다. 그리고 이후로는 미들튼이 있는 잉글랜드 북부 지역은 거의 찾지 않았다. 최근에 그곳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가족의 장례식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여전히 마을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내가 그 곳에서 일했던 때와 같은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협동조합 회관은 불필요하다고 간주되어 가장 먼저 사라졌다. 대형 슈퍼마켓의 지점들이 생겨남에 따라 마을 중심에 자리 잡았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1970년대 이후 미들튼-톤지 협동조합은 더 이상 별개의 독립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일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올드햄(Oldham) 협동조합과 합병을 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로치데일(Rochdale) 협동조합과 통합했다.

이러한 일련의 합병을 통해 훨씬 더 큰 규모로 구매 거래를 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테스코(Tesco)⁵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와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소매업의 지형은 새로운 방향으로 변했다. 소규모 상점은 오랜 역사가 무색하리만큼 쇠퇴하고 있다. 슈퍼마켓은 소매업의 표준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이 아닌 남성들이 쇼핑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50년 전 협동조합에서 일한 경험을 회상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자문해본다.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해 본 결과, 내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첫 직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생애에서 그 이전

⁴ 반어법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역자 주)

⁵ 영국의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이다.(역자 주)

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는 경계를 지어주는 특별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임금은 그것이 비록 적더라도 재정적인 독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매장에서 근무는 다른 의미로 가치가 있다. 그 일을 한 후에 나는 사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청소를 하는 등의 하찮은 일과 고객 응대 업무에서 나는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고 당시 다니던 그래머 스쿨의 편협함, 바깥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상아탑을 깨고 나올 수 있었다.

이처럼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본 결과, 내가 청소년기에 협동조합에서 일했던 경험은 역사 연구자에서 특히 사회사 전공으로 변화해간 이후의 나의 경력과 놀랄 만큼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체이다. 협동조합은 과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고, 물려받는 것들을 지키고자 했다. 이런 특징들은 미들튼-톤지 협동조합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그곳에서 근무했다.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은 영국 소매업의 과거 운영 방식의 마지막 시기였으며,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작고, 지역사회 지향적인 매장의 마지막 시기였다. 협동조합 직원들과 단골 고객인 조합원 사이는 가깝고 때론 친하기까지 했다. 나는 겨우 단기 직원이었을 뿐이었지만 이들 단골 고객들을 잘 알게 되었고 그들의 특별한 성격들까지도 알아채게 되었다.

고객들은 이 매장에서 요즘 사람들이 쇼핑 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쇼핑을 했다. 소매협동조합의 매장들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주택가에 인접한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매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고, 또한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필요할 때에도 매장에 들를 수 있었다. 주문한 물품은 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박스에 담겨 집으로 배달되었지만, 고객들은 걸어서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사서 가져갔다. 물품을 한 번에 많이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어떤 차량도 매장에 가까이 대고 기다릴 수 없었으므로 가져가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미들톤 협동조합은 또한 면직물 산업이라는 단일 산업 중심의 상호의존적인 경제적 지역사회라는 특별한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인도와 다른 극동 지역의 경쟁업체에 밀려 랭카서 지방의 면직물 산업이 쇠퇴에 접어들기 전이, 내가 미들톤을 회상할 때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다.

오늘날의 미들톤은 내가 학생시절 보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장소가 되었다. 면직물 공장과 관련 공장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협동조합 매장은 대부분 사라졌고, 또한 대부분의 감리교회와 비국교 교회⁶가 사라졌다.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 ‘커뮤니티’로서 오래된 기능과 분위기를 찾는 것이 어렵다. 실천적 사회 역사학자로서 볼 때, 과거의 미들톤 지역에서는 이런 모든 구성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통합적인 역할을 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뿌리 깊게 지역사회를 통합·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규정하게 돕는 힘이었다. 협동조합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산업 도시들은 그들이 생산한 물품과 그들의 노동 윤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비록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 추락했지만 여전히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은 최고로 여겨졌다. 또한 이러한 산업도시들은 그들의 풍요롭고 다채로운 사회·문화적 삶과 그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물론 과거에 대한 낭만주의는 잘못된 것이며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은 모든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공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요즘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 지켜 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고무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

⁶ 영국의 국교 교회는 성공회교회이다. 비국교교회란 성공회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역자 주)

*현재 Winchester 대학 명예교수로 역사학부의 학과장으로 오래 재직했다. 17세기 영국 역사와 관련된 다수의 책을 저술, 편집했고, 최근 Household Servants in Early Modern England(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와 Receptions and Revisiting and Social History, Local History and Historiography. Collected Essays(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2)라는 책을 발간했다. Richardson은 현재 맨체스터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Issues in Historiography 시리즈의 편집장이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Literature & History 국제 저널의 공동편집자로 일했다. 한국에 많은 친구가 있고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한국 학생들과도 교류하고 있으며, 한국을 정기적으로 즐겨 방문하고 있다.

(번역: 신효진(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대학원))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R.C.RICHARDSON

During three long school vacations in 1960, 1961 and 1962 I had summer jobs at the local Co-op in my home town of Middleton in Lancashire. Only a few miles from Rochdale, where the Pioneers started the first Co-operative retail store in 1844 and in the same heartland which spawned the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in 1863, Middleton in my teenage years had a thriving Co-operative network. Technically this was the Middleton and Tonge Industrial Co-operative Society, the name signifying that it served the two townships on each side of a dividing river (the Irk). The Society had been founded in 1850, not long after the original one in Rochdale, and in all kinds of ways I remember it as the dominant economic presence in the town in which I was born and lived until my University education took me to another part of the country. Middleton at this time was a relatively small town and was overwhelmingly bound up with the cotton industry; huge cotton factories (many of them dating from the pre-1st World War boom) had a striking presence in the urban landscape and employed thousands of people in spinning and weaving. One of them was given over to producing fine velvets. Man-made fibres such as rayon and nylon had joined cotton in some of the others. There were associated factories which specialised in dyeing and printing the finished cloth and one or two others which produced clothing. The CWS had three factories in Middleton, one making jams and marmalade, another vinegar and pickles, and the third specialising in fruit cordials and fizzy drinks. My family lived not very far from all these and as the wind changed different aromas, not all fragrant, wafted over. The town had two small railways stations, and frequent bus services to adjacent towns and

cities such as Manchester. There was a medieval parish church, a grammar school (which I attended) dating back to 1572, many Nonconformist chapels (especially of the Methodist denomination), a reasonably good public library, three cinemas, and a flourishing local culture in which sport (especially cricket), drama, music-making, art and gardening competed with each other for public attention. There were some notable buildings, mainly the work of Edgar Wood, a locally renowned early twentieth-century Arts and Craft architect. The town had its own newspaper, the *Middleton Guardian*. Reinforced at every level with family connections and intermarriage this was a predominantly working-class town with a proud local identity which the Co-op helped reinforce. Only the building from the late 1950s of a vast outlying estate to house some of Manchester's overspill population started to challenge and eventually weaken all this. Ignoring or keeping the newcomers at bay was an old town strategy not calculated to succeed in the long-run.

Physically as well as commercially the Co-op in 1960 dominated the town centre of Middleton, one side of the old market place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different Co-op shops and stores. There was a grocery supermarket –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town. Other retail outlets selling foodstuffs were still at that time old-style counter-service establishments; customers queued to be served with the goods they wanted. There were separate Co-op fishmonger's and butcher's establishments, a bakery, a Co-op pharmacy, and Co-op shoe shop. Larger than these, and housed in a separate two-storeyed building one street away from the others, were the men's and women's clothing departments, and a furniture and furnishing department which also sold carpets and rugs. In the street behind this row of shops and stores were the Co-op offices, the Funerals Department – this Co-op, like others of the day, catered for the whole life span. The Co-op Dairy was in the same street with vehicles which provided daily deliveries to people's homes across the town. The central grocery warehouse was close by in another street. Conveniently situated near Middleton railway station was the coal department; virtually all houses in Middleton at that time burned solid

fuel in their fireplaces. There was no separate branch of the Co-op Bank in Middleton at this time but its headquarters were in Manchester, the capital city of the cotton industry. The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was also based there but local agents – one of my uncles among them - came at regular intervals to homes in Middleton to receive dues and make payments when called for. Above the main row of central shops was a spacious Co-operative Hall in which public meetings, ballroom dances, fashion parades, parties, and other entertainments took place and which played host to the annual, high-profile show of the Middleton Chrysanthemum Society. The Hall also housed the Co-op's catering service which supplied sandwiches, savouries and cakes for weddings, funerals and other special events at different local venues. As a young boy I went each year to the Hall to attend the children's party organised by this Co-operative Society's Women's Guild. (My mother never belonged to it but two of my aunts were very active in the organisation and, at different times, served as its president). One of these aunts was also an elected member of the management board of the Middleton and Tonge Co-op. It was she who 'put in a good word' with the general manager of the grocery section to get me my temporary summer employment. In addition to the various shops and facilities in the centre of town the Middleton & Tonge Society also had branches of its grocery business, seventeen or eighteen of them in all, scattered around the small town, each with a separate manager and small staff.

Hardly any of these branches in my day were supermarkets. The rest, a number of them built in the same architectural style and uniformly painted, still clung to traditional ways and were spartan in their appearance; bare wooden floors were standard. Customers were served from behind wooden counters. One or two chairs were provided on which elderly customers could sit while waiting. Commodities like bacon, cooked meats and cheese were sliced or cut on request. (Butter, however, by this date was pre-packed). Most of these stores did not have refrigerated display cabinets but kept the goods in question behind the scenes in an enormous single

refrigerator. Frozen food had hardly made its appearance. Fruit and vegetables were sold from large bins or boxes by weight and were not pre-packaged. Commodities like starch and strong-smelling household carbolic soap, rarely seen today, were stocked and still found a ready market among the older age group of customers. These customers, too, it was patently clear, were chiefly women. Household shopping was still viewed primarily as part of the women's world into which men rarely trespassed.

In this Co-op, like all others, the main customers were the share-holding members whose stake in the organisation was recognised by a unique membership number. This was cited when paying for goods and a hand-written receipt issued which contained this number and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in the transaction. It was a simple, but clearly labour-intensive, method of accounting, and was made more complicated still by the fact that the same number could be quoted when buying goods from any other Co-op store in the nation so that the value of these external purchases could be added to a member's accumulating annual total of spending. Based on this grand total, twice a year, the Society paid a cash dividend to its members, which could be collected on specified days from the Society's finance office. 5% was the going rate (in pre-decimal English currency this was one shilling in the pound). As a small boy I remember going with my mother to queue to get the latest pay-out of the treasured 'divi'. Only later than my own time as an employee at the Co-op in Middleton were trading stamps introduced as a more convenient alternative to the old cash dividend system. These stamps had to be stuck on to the sheets or books provided and exchanged in due course for goods purchased. It was a practice which had originated with other retail (and petrol) companies; the Co-op caught up with the trend rather late and used it, surreptitiously, as a means of reducing the relatively high rate of loyalty-inducing dividend which had up to then prevailed.

My summer jobs at the local Co-op were always in the grocery department, twice

in branch shops and once (for my final season) in the town-centre supermarket. As a young and raw recruit my main tasks initially were related to goods themselves rather than to customers. As cargoes of commodities were delivered from the central warehouse to the shops on designated days I would have to help in unloading what was brought and in taking the boxes of goods to storage areas either behind or above the shops in question. Potatoes and other root vegetables were delivered in bulk and the heavy sacks had either to be carried in or hoisted by pulleys to an overhead storage area where, when required, they could be sent down by chutes into large metal bins in the shop. (This was exhausting, messy work for a teenage boy, as was carrying into the shop whole sides of bacon from the delivery vehicles!) From these bins the goods were dispensed when required, weighed on large metal scales, and handed over to customers to put in their own shopping bags or baskets. Free, disposable, plastic bags arrived in Co-op and other shops much later.

Three other responsibilities came my way. Filling up shelves with canned and packaged goods was one of them. In the Co-op branches, as opposed to the supermarkets, these shelves were all behind the counters, and sometimes (to maximise the available space) stretched up to the ceiling. 'Special offers' for the week were either stacked in small piles at the side of the counters or heaped up in small displays on the customer side of the counter. Advertising matter in these branch shops was minimal, and window displays, by modern standards, were embarrassingly bad. Small retail branches of this kind had no separate cleaning staff so a considerable share of sweeping, mopping, wiping, and scrubbing came my way.

But, once a week, an even bigger and more demanding task presented itself. This was packing customers' orders into re-used cardboard delivery boxes. There was a time-honoured system governing this practice. Each Co-op branch had an appointed home delivery day. Two or three days prior to this regular customers, invariably members of the Society, would call in with their order book (with membership number clearly displayed), containing a list of their wants for the coming week. I

would then have to go round the shelves in the shop collecting the canned, packaged or bottled goods in question and pack them neatly into cardboard boxes of a suitable size. Loose vegetables like potatoes and onions were placed in the bottom of them. Perishable produce and wrapped up bacon, cooked meats and cheese, obviously, were put in at the last minute on delivery days. Alternatives were supplied if particular items requested were out of stock. Unless named brands were specified the CWS's own products were always given priority. Prices of each item had to be carefully entered into the order books and totals inserted. A small delivery charge was added to each bill. These totals were then checked by the manager or his deputy and entered in a ledger. Finally customers' own orderbooks were placed at the top of the cardboard boxes containing the goods requested. Customers then paid for the previous week's order when bringing in their new one. It was a cash economy only. There were no credit cards, of course, at this date, and cheques in my experience were never used by the predominantly working-class clientele. Customers were not allowed to run up large bills. An unwritten rule was that last week's order had to be paid for before the next one was delivered. Deliveries for the Middleton & Tonge Society, as for others at this date, were centrally organised. A small staff of drivers went round to different branches on the different designated days to collect and deliver the boxes which, by the time they arrived, were waiting on the shop floor for them to take away.

The delivery system was taken for granted and expressed the traditional values and conscientiousness which the Co-op represented. Its staff, many of them long-serving, considered themselves to be the elite of the local retail trade, though devoid of the airs and graces which many of those working in the larger, more sophisticated stores in Manchester – the nearby big city – gave themselves. Dress codes were strictly observed. Staff in the town-centre Co-op specialist shops were always smart-looking; suits and ties were a requirement for male managers and workers in all but the fishmonger's and butcher's. (Ties, however, as the basic badge of respectability,

were worn by every male member of staff). In the grocery shops, too, male workers sported ties, light-coloured jackets and aprons, or long white coats. That was the kind of work clothing I wore, even though carrying greasy sides of bacon and humping sacks of potatoes dirtied them very quickly.

As a temporary employee of the Co-op during the summer I tended not to remain continuously at the same workplace but instead had to move around as needed to fill in for regular staff who were away on holiday. This was good in some ways since it introduced me to a wider range of staff, some of them of my own age, but it meant that my learning curve was made more steep and continuous by having to accustom myself quickly to the different lay-outs and regimes of each shop in which I found myself. In my first summer with the Co-op I was based only in the old-style service-provided branches. Thereafter in the two following summers I spent several weeks in both the central grocery supermarket and in one of the rare branch supermarkets. These were still small by today's standards and did not feature the shopping trolleys which later become standard. They were largely unnecessary. Not only was there no parking close by but far fewer people had cars, certainly not the working women who did virtually all the shopping. Stacking shelves in these busier shops was practically a non-stop activity for me though as I became more experienced I was permitted to serve customers in the specialist greengrocery or bacon, ham, cooked meats, and cheese sections. In a relatively small town some of these customers were people I already knew – schoolfriends, former schoolteachers and people from the local Methodist church which my family attended. As I recall the normal working week was forty to forty five hours – with overtime available at least in the central grocery supermarket. My first take-home pay (in one of the smaller, old-style, branches) was just under £5 per week – derisory by today's very different standards, but at the time and in my very first job acceptable enough. In any case I had no yardstick with which to make comparisons. Three or four years later when, more ambitiously, I secured my first summer job as a temporary school-teacher in a secondary school

the weekly salary was £22.50. It seemed a princely sum in those days.

Since the late 1960s I have lived in the south of England and worked in universities and now rarely go back north to Middleton; all of the most recent visits there have been for family funerals. The Co-op still has a residual presence in the town but nothing like what it had in the period I worked there. The Co-operative Hall, eventually deemed redundant, was an early casualty. The old town-centre shops and stores have all gone, as have all the small outlying branches of the grocery department. The Middleton and Tonge Co-operative Society ceased to be an independent entity in the 1970s. An amalgamation with the nearby Society in Oldham came first and then, a few years later, this combined organisation itself merged with the Rochdale Society to create an even larger grouping which, it was hoped, by means of greater bulk purchases and other economies of scale, would compete more effectively with new rivals such as Tesco. The world of retailing had changed in other ways by then, of course. The age of small shops was in eclipse. Supermarkets, no longer the exception, became the norm. And men, no less than women, were to be seen doing the shopping.

Looking back on this work experience gained fifty years ago it is pertinent to ask what I gained from it. Pondering this for a while it became clear to me that there are more answers to this question than I first suspected. Anyone's first employment, of course, represents a landmark, a major dividing line in the life cycle. The wages – small though they were – bestowed some degree of temporary financial independence. But working in shops was valuable in other ways. It brought more social immersion. Moreover, doing menial tasks and serving others brought new perspectives and enabled me to break out of the narrow, enclosed, ivory-tower world of the grammar school. Such work facilitated social interaction. But in a deeper sense I now recognise that working at the Co-op as a teenager was in some ways surprisingly relevant to my later career trajectory as an academic historian coming to specialise in social history. The Co-op itself was a historic institution, proud

of its past and defensive of its legacy; such things were especially evident in the Middleton and Tonge Society which was one of the first of its kind in England. But beyond this, I worked there at a critical juncture. These I now see - though it was not obvious at the time - were the last days of old-style retailing in England, the last days of smaller, community-oriented, shops serving a known clientele. Close, often friendly, relations existed between Co-op staff and their regular customers. Even I, as a temporary employee, got to know these regulars pretty well and recognised particular 'characters' among them. Shopping in these stores was a more frequent habit anyway than it is today. Since the branches, at any rate, were strategically close to people's homes, many customers were able to slip in for odd items as soon as it was noticed they were needed and also to socialise. With the exception of the regular delivered weekly orders packed in boxes the few items that were bought on a shopping visit had to be carried away by a purchaser who had arrived on foot. Buying a large assortment of supplies at one time made no sense; it simply created a transportation problem. No cars were waiting close by into which the goods could be conveniently loaded.

The Co-op in Middleton was also closely bound up with its specific context of an interdependent economic community revolving very largely around a single industry, in this case cotton. These were the final days, it can be seen in retrospect, of the Lancashire cotton industry before it was killed off by foreign competition from India and the Far East. Middleton today is a very different place from the one I remember as a schoolboy. The cotton mills and associated factories have all disappeared. So have most of the Co-op shops. So, too, have most of the Methodist and other Nonconformist chapels. So, for that matter, has the traditional working class. So, indeed, has the old sense of local 'community'. All these elements, I now see as a practising social historian, were closely bound up together. The Co-op was an integral part of the fabric of local life; in a deep-seated way the Co-op was a social as well as an economic institution. Historically it was both an expression of community

life and a force which helped to define it. It was a pillar of society. Industrial towns took great pride in what they produced and in their work ethic; even if Britain had ceased by then to be the undisputed workshop of the world British goods were still considered to be the best. These industrial towns also took pride in their rich and varied social and cultural life and their distinctiveness.

Romanticising the past, of course, is wrong and should always be avoided, but it is surely reasonable to say that the Co-op was a major integral part of the urban scene and functioned as a force for the common good. As an Englishman looking from a distance at the current growth and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ve idea in South Korea it is heartening to see others recognising the same potential. 

R.C.RICHARDSON

BA PhD Fellow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is Emeritus Professo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Winchester, where he was for many years Head of the History Department. He has held a number of visiting professorships at universities in the USA. He has authored or edited a large number of books, chiefly in the field of seventeenth-century English history. His most recent publications are *Household Servants in Early Modern Englan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and *Receptions and Revisitings and Social History, Local History and Historiography. Collected Essays* (2 volum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2). He is General Editor of the series *Issues in Historiography* fo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and for over thirty years was co-editor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Literature & History*. He has a wide network of friends and former PhD students in South Korea and is a regular and appreciative visitor to that country.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때/곳: 2012년 5월31일(목) / 성공회대 일만관 세미나실

참석: 국태봉(교육공동체 린)

김일섭(여행 생활협동조합)

석승역(한부모일자리창출을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조성돈(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사회/정리: 김아영(생협평론 편집위원)

사회: 안녕하세요?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협동조합을 일궈 나가는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의 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조성돈(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하 조성돈):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한 가지가 ‘원자력 발전소 1기 줄이기’인데요,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만큼 전기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약 100만kw의 전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계획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 옥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햇빛발전협동조합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서울에 있는 관공서와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발전소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가능한 것은 올해부터 RPS제도¹라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RPS

¹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강제하는 제도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편집자 주)

제도는 발전소에게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발전소는 자신들이 채워야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량의 50%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전소는 12년 동안 기본 가격보다 약 세 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햇빛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는 거죠. 저희는 12년 동안 햇빛 발전소를 운영하고 이후 발전소를 세운 곳에 기부 채납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를 팔아 생기는 수익은 먼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현재 약 5%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저소득층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발전소가 세워질 장소의 절반이상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교육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156명의 조합원이 있고, 출자금은 1인 10만 원부터 3천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협력자인 서울시와 사업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이 되어야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어서 그전까지는 우선 협동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섭(여행 생활협동조합/ 이하 김일섭): 처음에 협동조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조성돈: 처음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서울시와 사업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는데 사단법인의 형태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배당에 대해 명시한 협



동조합 형태의 정관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서울 시민햇빛발전소’라는 명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 사단법인체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하는 운동을 하고, 협동조합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쌍방향 여행을 만들어 나가는 여행 생활협동조합

김일섭: 저희 여행 생활협동조합은 작년 11월에 ‘여행생협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여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약 50명 정도이고, 인터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회원은 160여 명 정도인데, 지금까지 10여 차례 여행이나 탐방을 해왔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여행지에 가서 일방적으로 즐기고, 자연과 현지 사람을 대상화시키는 여행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존할 수 있는 공정여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행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인과 여행객을 받는 현지인이 같은 단체 구성원이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교류하고, 귀촌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동체와 의미 있는 교류를 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하려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상근자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여행 동호회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은 주 5일제 수업으로 주말에 여행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체험여행을 기획해 보는 것과, 회원이 운영하는 전국의 자연치료, 명상수련원, 펜션, 생태공동체들과 연계해서 공동 사업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해외의 공동체와 연결을 해서 해외탐방 등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석승역(한부모일자리창출을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석승역): 저희는 한부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협동조합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일단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먼저 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구상을 하게 된 거죠. 한부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콜센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 등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서 성북구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에서 한부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콜센터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한부모가 중심이지만 이외에도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전체 구성원의 10% 이내로 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회: 한부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한부모의 필요와 요구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석승역: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만 한부모들을 직접 만나보니 그분들이 일자리와 양육에 대한 가장 큰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된 상태입니다. 올 해 12월에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는데 협동조합은 세제 혜택이나 대출이 불가능해서 고민이죠. 아마도 초기



에는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형태로 추진하다가 협동조합법이 세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점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까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의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협동조합

국태봉(교육공동체 린/이하 국태봉): 저희는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 있고 지금은 협동조합이 아닌 영농조합법인 상태입니다. 저희도 법인 형태를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고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함께 해보자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고산에 있는 고등학교와 음악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자체 사업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보트 체험, 제과 제빵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연 발효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빵을 판매하는 사업이 될까 했는데 의외로 지역에 사는 젊은 주민들과 인근 전주에 있는 분들이 동참해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에는 완주군과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빵을 위한 조그마한 공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은 약 40여 명 정도이고, 10만 원 이상의 출자를 받고 있는데,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지는 않고 수익을 지역 아이들의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일섭: 말씀을 들어보니 지역의 성인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협동조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공동체 린도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는 것인가요?

국태봉: 저는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 어떠한 목적이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 아이들의 문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부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이어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판로 확보 등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수익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익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가고, 아이들을 위한 활동은 사단법인이나 임의 단체 형태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사회: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조합원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좌담회에 참석하신 여러 단체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단체의 형태가 협동조합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이러한 고민과 흐름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왜 ‘단체’가 아닌 협동조합인가

조성돈: 저는 조합원의 요구(needs)를 해결해 주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저희 160여 명의 조합원들은 재생에너지만을 원한다거나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비싸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요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지구를 살리고, 에너지



위기에 원자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대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을 생각한 이유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윤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싼 에너지를 조금 바보스럽게 생산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에게는 오히려 여러 시민들이 햇빛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바뀌는 것이 이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국태봉: 저희가 협동조합을 이야기 할 때 조합원은 고용주인 동시에 고용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한 아이를 맡기면 다른 한 아이를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빵 사업의 수익으로 상근자나 활동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수당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보트 체험이나 목공, 쿠킹 클래스, 음악 캠프 같은 체험 활동은 연말에 군에 정책 제안을 해서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승역: 저는 공통의 관심사나 고민, 취미 같은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공통의 관심사에 맞는 혹은 가장 적절한 사업에 출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편리성이나 유용성 혹은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개선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저희는 협동조합을 고민할 때 다른 협동조합과 적절히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아닌 비영리단체나 다른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여행협동조합으로 지역의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자: 새로운 협동조합이 어때야 한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협동조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은 늘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던져주지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진보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승역: 저희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일단 협동조합을 법인형태로 사회적 기업 방식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콜센터 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가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가족에게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대안적 가족 형태를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하나 있는 한부모 가정과 딸이 하나 있는 한부모 가정이 연대하여 기능적으로는 엄마, 아빠, 아들, 딸로 구성된 완전한 가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전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과 한부모 가정이 연대할 경우 가능성은 충분 하다고 봅니다.

국태봉: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행복한 마을살이’입니다. 결국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할 기회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의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연계하여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일섭: 저희는 즐겁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익한 여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자체 힘만으로는 어렵구요, 행복한 마을들과 공동체가 만들어 지고 저희는 그런 곳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좋은 여행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조성돈: 햇빛발전소는 사업규모상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각 참여 단체들이 해당되는 학교나 관공서에 발전소를 하나씩 세우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부터라도 재생 에너지를 확충해야 되고, 비싸더라도 사용해야 하고, 어렵더라도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오늘 새로운 협동조합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오늘 해준 말씀들이 새롭게 또 다른 협동조합을 고민하는 분들 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 평화

- 이슈** ▪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3월11일 2시 46분, 시간이 멈춘 곳

같은 날 작은 마을에서 127명이 죽었다. 1,200년 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유명하며, 일본 최고의 철새 도래지인 미야기노구, 가모갯벌이 있는 가모지구는 지진과 쓰나미 집중 피해 지역이다. 전철역에서 내려 10분 가량 걸으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로 만든 가설주택을 만난다. 총 17개 동으로, 1개 동마다 6개의 집이 있다.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갈라져 있다. 공장지대로 가면 쓰나미가 몰려와 맥주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냄새가 지독했던 기린 맥주 공장이 간판만 자랑한다. 공장도, 빠친코 가게도 모두 무너졌다. 군데군데 비어 있으며 복구중이다. 쓰나미에 휩쓸렸던 나무들도 죽어간다. 1년이 지났지만 도로 수리도 안 돼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펼침막이 펴려있는 호텔이 눈에 띈다. ‘영업중’, ‘힘내라 동북’, ‘혼자와도 환영’, ‘자원봉사자, 노동자 환영’, ‘성인 채널 무료’….

마을로 들어갈수록 모든 문이 열려 있는 빈 집에 아직 치우지 못한 쓰레기만 쌓여있다. 세찬 바다 바람에서 썩은내가 진동하고, 초등학교 벽시계는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 쓰나미에 묻힌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불에 탄 건물은 바람이 불때마다 흉물스럽게 삐걱삐걱 쉿소리를 냈고, 사람의 손길이 없는 곳에서 야생 머위만 자라고 있다. ‘버스 안 다님’이라는 글만 초라하게 붙어 있는 버스 정류장엔 기다리는 사람도, 그리운 사람도 없다. 시간이 멈춰버린,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서 1년을 지낸 마을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취재진: 뭐하세요? 잠시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모두 마을 사람들인가요?

주민A: 다 마을 사람이에요. 위령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위령제를 할 거예요.

취재진: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A: 네. 행정하고는 상관없죠.

취재진: 벌써 1년이라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복구가 늦네요. 복구될 가능성은?

주민A: 정부와 행정기관은 해일 경계 지역이라고 아무 것도 짓지 못하게 합니다.

복구 가능성은 정부에 물어보면 알겠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취재진: 어디 사시나요?

주민A: 가설주택. 가족들이랑 다 거기 살아요.

취재진: 피난 생활이 계속 될 수도 있겠네요.

주민A: 처음 겪는 일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려워요. 대책 늦는 게 가장 답답해요

취재진: 정부와 행정기관에 할 말이 많을 텐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가요?

주민A: 요청해도 정부, 기관은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말해도 헛소리로 되는 것 같아 할 말이 없습니다.



무너진 초등학교. 작년 3·11 재해 시간으로 멈춰버린 시계가 보인다.

콘크리트 집터만 남은 곳에서 사람이 살았던 곳이었음을 상상할 뿐이다. 종종 집터는 곧 사망 장소이다. 마을 곳곳은 추모 분위기로, 바다 가까이에 추모 글이 가득하다. “어디로 갔나 지나간 날들, 다시 돌아와”, “학창시절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가모지구를 사랑한다. 하루라도 빨리 웃을 수 있게”, “다 없어지고 너무 슬프다. 10년, 20년 후에는 돌아갈 수 있기를. 그런 날을 기도한다”...



마을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위령비를 세우고 일요일 위령제를 준비하는 모습

방사능 공포의 악순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농사 복장 그대로 도망쳤다”며 전쟁 같던 시간을 풀어내는 피난민, 자주피난민¹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돌아갈 수 없는 땅, 후쿠시마 원전 20km 경계 안 사람들은 일본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정부는 사고 이전 20km 내 거주하고 있던 인구 약

¹ 원전사고 직후 일본정부가 반경 20km 이내 지역을 강제피난대상인 ‘경계구역’으로 정했으나, 그 외 방사능 피해 지역은 피난 방침을 내리지 않거나 뒤늦게 내리는 바람에 스스로 피난한 주민들을 자주피난민이라 부른다.

7만8천2백 명 중, 사고 이후 작년 4월22일 10개 지역에서 약 8만5천 명이 대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주피난민까지 합치면 15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살기 위해 도쿄 등지로 피난 갔지만 집을 구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해 도, 시영 주택으로 입거한 피난민도 있지만, 피난소나 가설주택 등에서 살고 있다.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구한다 하더라도 낮은 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생활고와 더불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작년 3·11과 다른 결의 공포, 혹은 무기력을 느끼는 듯 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TV보며 하루 종일 지내요. 심심할 때는 빠친코, 가라오케 가고 술 마시고. 일주일에 빠친코, 가라오케, 술집 두 번씩 가요. 그 외에는 할 일이 없고 쓸쓸합니다. 여러 단체와 정부, 지자체에서 한 사람당 20만 엔(한화 274만 원 가량) 받았어요. 후쿠시마 동네 사람들 중에는 생계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지진 때문에 또 많은 빚을 지게 됐죠. 이미 주택 대출 빚도 있는데, 그 빚도 갚아야 하니까요” -피난민 다카다(78세)씨-

“정부가 자주피난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혼자 피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방사능 오염 구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자주피난민을 인정하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난 뒤 고민해야 하는 거죠. 뒤늦게 자주피난민에게도 배상한다고 결정했지만 배상금액도 납득할 수 없어요. 사고를 낸 건 도쿄전력이예요. 원자력발전을 추진한 건 정부입니다” -자주피난민 간자와 사오리(33세)씨-

또, 일부 피난민들은 방사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떠났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인근을 배회하기도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배상 문제와 생활고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 교대로 경비를 서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금을 받거나, 피난을 갔다가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노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떠난 고향마을에 ‘생존’을 위해 방사능으로 뒤덮인 마을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이다.



모두 쓸려가 집터만 남았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엄청난 양의 폐기물도 공포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유출 이후 제염과 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성 추산,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 등 해안 지대에서 대재난으로 생겨난 건축폐기물은 약 2,380만 톤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이와테현에서 도쿄로 대략 천 톤의 폐기물 첫 운송이 시행됐는데, 이와테현 지방정부는 이 폐기물에 133벵크렐(bq/kg)의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3월 이전이라면 불법인데, 정부는 7월에 건축폐기물 안전수준을 100벵크렐에서 8,000벵크렐로, 10월에 다시 10,000벵크렐로 상향 조정했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염된 토사들을 일본 전 지역으로 분배해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정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엄청난 양의 물질들을 위한 임시보관소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폐기물 일부는 소각되었다. 소각되었다 해도 매연을 통해 생긴 방사능은 또 확산된다. 결국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핵폐기물 처리는 속수무책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전 20km 붉은 불빛 지나 나오는 노동자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20km 떨어진 J빌리지 앞에 붉은 불빛이 맴돌고 경계가 삼엄하다. 경찰과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의 철저한 통제로 막혀 있다. 후쿠시마에서 J빌리지로 가는 인근 고속도로에서 시간당 2.02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높은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기도 해 피폭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방호복조차 입지 않고 있다. 이들은 ‘도둑과 테러 경계’로 경비를 서고 있고, 마스크는 ‘신종플루 예방차’ 착용하고 있으며, 방사능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생각한 적 없으며 여기는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는 방사능 공포로 자국 국민이 대거 피난한, 줄줄이 폭발한 원전 바로 앞에서 도둑놈, 테러범 막는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무엇이 테러일까.

진실은 없고 정보만 난무한 J빌리지 앞으로 노동자들의 퇴근 차량이 줄을 잇는다. 제1원전에 하루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 J빌리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2km 떨어진 사고 수습 전진기지로, 모두 남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빌리지에서 출퇴근하며, 주로 사고 원전 주변의 쓰나미 잔해 처리와 오염 제거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원전이 노동자들의 피폭과 희생으로 유지, 복구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환경은 베일에 싸여 있다. 일본 노조, 환경단체 등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청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쿄전력 직원에 비해 16배나 높은 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작년 3월15일 비상사태에 남성 핵발전소노동자의 한 해 동안 피폭한계치를 100밀리시버트(mSv)에서 250밀리시버트로 높게 책정하기도 했다. 그나마 노조가 있으면 실상이 알려지거나 미약하게나마 노동조건 개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전노련 소속 건설교통노련 후쿠시마현 덤프트럭지부는 조합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건설 회사를 통해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건설 작업을 맡았는데, 한 달 정도 작업하자 누적량 10밀리시버트(mSv, 일반인의 10배) 피폭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3호기 방수 작업으로 특수펌프차를 운전하는 조합원들로, 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작업인데도 피폭량이 많은 것이다. 조합원들은 방호복을 입고

그 위에 가빠(소매 없는 비옷)를 입는다. 공기가 드나들지 않게 얼굴에 전부 마스크를 쓰고 실리콘을 발라 완전히 밀봉한다. 그렇게 현장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하루 15분 가량 작업한다. 노조는 방사능 피폭 선량계의 경보음이 울려 놀라서 보면 40마이크로시버트, 70마이크로시버트를 넘어간 적도 있다며 조합원의 내부피폭을 걱정했다.

원전 노동은 피폭을 전제로 하는 일이지만 단체, 노조에 의하면 대략 하루에 임금 1만 엔(약 13만6천 원), 낮은 경우 8천 엔(약 11만 원)을 받는다. 아무런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원전 하청노동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피폭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올해 2월 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복구공사에 투입됐다가 숨진 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로사’ 판정을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피폭노동이 산업재해로 처리된 적은 지금까지 10명 밖에 없다.

“원전은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원전산업은 원청이 어디인지 파악하기조차 힘든 중층 하청구조이다. 발주 회사는 전력회사이고, 원전 건설과 시공사들은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과 같은 대기업과 플랜트 건설 회사이다. 피폭노동자 지원 활동가이자 단체인 나스비는 “7~8차 다단계하청”이라고 했고, 일본 전노련은 상담해왔던 노동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18차 다단계” 구조라고 했다. 하청, 재하청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노동조건이 더 악화된다. 고용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애매한 상태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청은 하청 구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도쿄전력이 인정하는 것은 3차까지이다. 노동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3차 하청 직원으로 원전 현장에 들어간다. 고용관계가 위장되는 것이다. 누가 고용주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하청구조는 전력회사에게만 좋은 것이다. 노동자는 피폭되면 일하지 못한다. 일회용 노동자이니까” -나스비(가명, 47세)씨-

일용직노동자와 원전산업노동자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원전산업 노동자 중 70% 가량이 지역민이고, 30% 가량이 오사카시의 가마가사키와 같은 전국의 빈곤 지역에서 온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된다.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난 1년 동안 연인원 84만 명 가량이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피폭에 대한 지식이 없다. 피폭노동 문제를 파헤치는 단체, 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은 고용조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모집 당하고 있다고 했다. 트럭기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갔더니 후쿠시마 원전 안에서 배관 일을 시키는 식이다. 또, 하청노동자들은 빗 때문에 조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원전 일에 끌려가기도 한다.

“하청 구조의 제일 밑, 그러니까 빈곤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조폭이다. 폭력적인 구조 때문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빈곤 지역에 머무는 일용직노동자들 대다수가 원전에 일하러 가거나 빗에 허덕여 사실상 끌려가기도 한다” -나스비(가명, 47세)씨-

하지만 실제로 어떤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지 전력회사는 밝히지 않는다. 원전이 있는 지역은 대체로 좋은 일자리가 없는 낙후된 지역이다. 일자리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선전하고 전력회사와 정부가 그런 빈곤 지역에 원전을 유치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하마도리 지역의 경우 농업조차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가까이에 있는 나미에마치 지역민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절반 이상이 원전에 취직해 원전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한다. 이들은 “화려한 건물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작년 그날처럼 추웠던 3·11...거리로

1만 9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엔(약 238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복합 재앙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강도 9의 거대 지진은 최고 40미터 가까

운 쓰나미를 몰고 왔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휩쓸고 냉각 기능을 앗아가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이어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 지금도 대지진과 쓰나미 집중 피해 지역인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서 34만2천500명의 주민이 집을 잃거나 등지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작년 그날처럼 추웠던 3·11이 돌아왔지만, 365일이란 물리적 시간은 충격을 잊게 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명언(?)은 착각이었다. 시간당 방사선량이 1마이크로시버트를 왔다 갔다 하는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야구장에 모인 1만6천여 명은 탈원전(혹은 탈핵)을 요구했다. 도쿄에서도 3만여 명이 모여 1만여 명이 국회로 향해 ‘탈원전 사회 만들기’ 인간띠 잇기 행사를 했다. 14기 원전이 있는 후쿠이현, 원자폭탄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던 히로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24개 현에서 집회가 열렸고, 프랑스, 스위스, 대만, 한국 등 해외에서도 3·11 전후로 탈원전 집회가 열렸다. 제대로 된 위령제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은 3·11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3·11 집회



3·11 집회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고,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집에 돌아갈 수 없고, 시신을 찾을 수 없고, 방사능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수많은 사람이 피난가고, 많은 노인들이 죽고, 엄마들은 불안에 떨고, 농민들은 일할 수 없고, 공장 가동도 안 되는 상태이다. 예전과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대학 부학장-

거리로 나선 ‘아마추어의 반란’ 활동도 돋보인다. 일본의 운동가 겸 작가 마츠모토 하지메(38세) 씨는 “일본 특유의 자숙 분위기가 징그러워 반원전에 나섰다”고 했다. 사고 직후 열흘 만에 준비해 도쿄의 고엔지(신주쿠에서 전철 10분 거리)에서 4월10일 열린 ‘원전 중단해! 고엔지 집회’에는 신주쿠까지 걸어가는 동안 1만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이 주최한 집회는 5차례로, 참가자만 6~7만 명에 이른다. 9월10일에는 도쿄 곳곳에서 6만여 명의 사람이 모여 ‘반원전’을 외쳤고, 올해 2월11일에도 집회가 열렸다.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 이후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나서 후쿠시마의 방사능 0베크렐 농산물 가게 ‘야채카페 하모르’를 만들었고,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에 맞서 후쿠시마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을 건설하자고 모금 활동에 나선 전문가와 대학생들, 재해와 원전 사고의 참상을 기록하는 미디어활동가 등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나서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에 모두 휩쓸린 가모지구의 한 집 터에 누군가 적은 글귀처럼 “재해는 잊어버렸을 때쯤 되어서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는다. 잊으면 안 된다.” 그가 죽은 이들을 추모하며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인 오감에 더해 여섯 번째인 의식, 즉, 감각과 의식을 투명하고 깨끗이 하라는 ‘로콘쇼쇼’를 적은 것처럼, 동일본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공포를 경험한 일본인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의식을 깨워가고 있다. 



3·11 집회 - 고리야마시 운동장에 모인 집회 참석자들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3월7일, 구럼비 발파가 시작되다

구럼비 발파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제주도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였을까. 당시 국무총리 발언을 통해 나온 정부의 공사강행 입장표명이나, 확실한 진압을 하지 못했던 서귀포 경찰서장들이 몇 차례 해임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발파신청이 접수되면 서귀포경찰서가 바로 허가를 내주고 곧바로 발파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이 진행되어 왔고,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공사가 진행될 줄은 몰랐다. 어쩌면 우리가 순진했는지도 모른다. 구럼비 발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멀리서 촛불을 들거나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구럼비 발파를 저지하거나 늦추기 위한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뭔가 뽀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시작될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시점이었다. 발파를 며칠 또는 몇 주일이라도 미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구럼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덜 다치고 덜 상처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사 구럼비가 깨어지더라도 해군기지를 막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주 강정마을로 향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강정마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오래도록 싸움을 이어왔는데도 결국 이런 상황이 닥친 것에 대한 허탈함과 분노,

¹ 제주 강정마을의 해안가에 있는 폭 1km가 넘는 독특한 너럭바위를 일컫는 말. (편집자 주)

그동안 비상식적이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보인 공권력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결의가 뒤섞여 비장감마저 느껴졌다. 예상했던 대로 발파승인이 떨어졌고, 소식을 듣고 강정마을에 온 사람들은 모여서 이를 막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다. 구럼비를 발파하러 이동하는 화약을 막아야 한다. 안되면 최대한 늦추기라도 해야 한다. 발파가 시작되기 전날 밤,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 전체가 의례회관에 모였다. 화약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러 마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화약고 앞에 답사를 갔다가 활동가 몇 명이 연행되는 일도 있어서 분위기는 더 심각했다.

어떤 방식으로 화약 이동을 막을 것인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간혹 의견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비폭력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 1천 명이 넘는 경찰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소수였고, 힘으로 겨루어 승산이 있는 싸움도 아니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다. 그렇게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밤샘을 하면서 대기했다. 밤이 참 길었다.



강정마을지킴이 신부님들의 생명평화미사 (출처: 제주의 소리)

새벽 4시쯤이었을까. 마을에 사이렌이 울렸고, 마을 회장님의 간곡한 방송이 이어졌다. 모두 준비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차를 가지고 와서 마을로 들어오는 강정천 입구에 지그재그로 주차시켰다.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여서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공사장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 강제로 견인한다 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차벽을 여러 겹으로 만들었다. 나를 비롯한 여성 활동가들 몇 명은 쇠사슬을 준비해 차벽 맨 앞에 몸을 묶었다. 차들을 쉽게 견인하지 못하게 해서 화약의 진입을 최대한 늦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여성들이라 여경이 올 때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무언가 잔뜩 준비해서 지나가던 신부님들은 펜스와 철조망을 넘어 직접 구럼비로 들어가셨고, 해상팀은 카약을 타고 구럼비로 향했다. 아직 까마득한 새벽, 사람들은 추위를 달래기 위해 계속 강정댄스를 추고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이어가며 마을 입구를 긴장된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다. 차벽 맨 앞에 쇠사슬을 묶고 앉아있으니 저 멀리서 전경들이 몰려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다. 모두들 최선을 다했지만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구럼비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을 진입로를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행되었고 결국 차도 모두 견인되었다. 그 사이 화약은 배로 옮겨졌고, 12시가 되기도 전에 첫 발파가 이루어졌다. 경찰서에서 구럼비 발파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다.

파괴되는 것은 구럼비만이 아니다

도둑이 없어 유치장이 한 곳밖에 없다는 제주도인데 연행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였을까, 당일 저녁에 연행자 모두가 풀려나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극도로 긴장했던 피곤한 하루가 마감이 되나 싶더니, 다음날 새벽부터 또다시 사이렌이 울렸다. 화약고에서 화약을 실은 트럭이 매일 아침 6시에 출발하는 것이다. 총 40톤이 넘는 폭약이 5월까지 날마다 나뉘어서 공사장으로 운반이 되고, 사람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거리로 나가서 마을 입구에 앉아 싸움을 하는 것이다. 경찰과 마찰로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연행되고 그렇게 싸우다 밀리고 화약이 운반되는, 그런 전쟁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경찰들은 계속 교대하지만 우리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거리를 지켜야 한다. 배도 고프고 춥고 피곤했다. 안보를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해군기지는 이렇게 강정마을을 이미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지가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었고 강정마을이 선정된 것은 2007년이니, 5년 넘게 싸워온 주민들의 피로감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마을 주민 1,900여 명 중 87명만 모여서 박수로 결정해버린 해군기지 부지선정 이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약속하며 협조적으로 나온 찬성 측 주민들에게 보상과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듯 했지만, 정부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유입되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 친인척 관계로 엮인 작은 마을에서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제사도 함께 안 지내고 형제 사이도 멀어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제주도의 그 어느 마을보다 풍요로워 자손 대대로 평온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의 공동체는 구럼비보다 먼저 깨져나갔다.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은 자기 땅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는 것이었다.

누구를, 무엇을 지킨다는 것인가

제주 올레길 중 가장 좋다고 소문난 올레 7코스.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1km가 넘는 용암너럭바위인 구럼비 바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뚝개와 연산호 군락지.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 앞바다. 강정에 가보기 전에는 도대체 얼마나 좋기에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나 싶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구럼비 바위에 앉아있으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나 역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화산섬인 제주에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개천이 있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

는 강정은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잘 보존하고 지켜도 모자랄 판에 이 아름다운 땅과 바다에 군사기지를 짓는다며 파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관광미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았다. 이런 자연환경을 포기 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이 정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새롭게 군사기지를 건설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안보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왜 북한과 가깝게 제주도 최남단에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필요로 할 만큼 군사적인 위협이 있는 곳일까. 이 의문에는 외교부가 수중암초라고 말한 이어도가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가 등장한다. 이렇게 군사력의 확대를 위해 동원되는 근거들은 항상 위협 인식은 과장되게 하고,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과장된 위협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해군기지는 미군기지로 언제든지 활용될 우려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갈등의 빌미가 바로 이곳, 제주 해군기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미 동아시아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있고 지나치게 무장되어 있다. 백번 양보해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강정마을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지, 누군가의 삶을 빼앗아야만 지켜지는 평화라는 것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무장은 상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평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마을만의,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주변 국가와의 분쟁에서 안전을 찾기 이전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불법을 지키는 공권력

지금 강정마을에서 국가는 공권력을 가장 불법적인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

다. 경범죄 사안으로도 마구잡이 현행범 체포를 하고, 주민과 강정 지킴이들을 향한 경찰과 군인의 폭력은 늘어간다. 화약을 운반하는 차량이 아무런 표시도 없이 이동하거나 신고한 운반경로를 어겨도, 거센 파도로 끊어진 오탁수 방지막의 보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법을 어기면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도 공권력은 늘 공사를 강행하는 시공사의 편이다. 불법의 방관을 넘어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활동가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한 명만 건너면 친인척으로 연결되는 제주의 특성상 제주 출신 경찰들은 현장에서 강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육지의 경찰들을 교대로 대거 투입하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여러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공사장 정문에서 기도하던 수녀님들이 연행되었고, 문정현 신부님이 삼발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경찰과 대치 중 바다에 떨어져 실려가는 문정현 신부님 (출처: 프레시안 손문상)



평화활동가 엔지젤터 (출처: 강정마을 - ID:진달래산천)

경찰들의 불법 채증과 체포, 계속되는 연행과 재판, 벌금으로 인한 압박은 엄청나다. 외국인 활동가 벤자민과 엔지 젤터는 국외로 추방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4월13일 강정마을 전체에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는 통보를 했다. 계엄 상황도 아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거대한 국가권력의 힘 앞에서 막막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고, 이제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떠날 만도 한데, 정말 놀랍게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끈질기게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진화하고 있다.

비폭력투쟁의 진화

국가와 자본의 편에 서서 시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대하고 막강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다보니, 지금 이 긴박하고 막막한

상황에 맞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 계획을 짜고 어떤 직접행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폭력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지에 대해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들도 훈련되고 있다. 저들이 가진 힘과 우리의 힘이 맞서는 대응이 아니라 그 힘의 불균형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지지자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첫 발파가 있던 날 맨몸으로 쇠사슬을 묶은 여성 활동가들이 그랬고, 화약은 반을 막기 위해 PVC 파이프를 팔을 묶어 화약고 앞을 봉쇄한 작전도 그러했다. 특히 PVC 파이프를 해체하기 위해 경찰이 사람들의 팔에 망치와 전기톱을 사용한 것은 모두를 경악시킬 정도로 몰상식적이었고(심지어 여러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다. 이후 여론을 의식한 경찰과 시공사는 공사를 만나질 중단하기도 했다.

비폭력 직접행동을 준비하면서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행동의 원칙을 만들어나가고, 강정마을에 와서 직접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얼도 만들어졌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을 고민하는 과정은 한국의 사회운동과 집회시위 문화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에서는 비폭력적인 저항 방식에 대해 나약하고 비겁하다는 오해가 일부 있기도 했지만,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비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강정에서는 비폭력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는 폭력과 권력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했다. 실체를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공사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를 지으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 힘을 만들어내고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각이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욕심내는 시공



해군기지 건설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앞 퍼포먼스 (출처: 참여연대)

업체들이 있고, 거대한 군사기지를 욕심내는 군인들이 있는 것이다. 이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하나씩 드러내고 문제 제기하고 저항하고 압박하는 행동들 역시 이어졌다. 평화활동가들은 주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죽어가는 구름비를 상징하는 빨간페인트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비를 죽이지 마라’고 쓴 노란 티셔츠를 입고 삼성물산 본사 건물을 둘러싼 인간띠 잇기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삼성카드 탈퇴 운동과 삼성불매운동을 진행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루에도 수십 대씩 공사장을 드나드는 레미콘을 가로막고 기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설득하는 행동은 소모적으로 보이기도 했으나, 더 이상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기사님이 생겨 비폭력 행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이어지는 다양한 행동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강정으로 불러들이는 하나의 매력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강정마을에는 뭔가가 있다

몇 차례 강정과 서울을 오가며 이런저런 액션과 행사를 준비하며 3월과 4월을 정신없이 보냈다. 강정에 다녀와서는 한동안 꽤 아프기도 했다. 그저 환절기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기침 때문에 목이 메고 가슴이 아픈 증상은 약국에 가도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목이 메고 가슴이 아픈’ 것은 감기 때문만은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다시 제주행 비행기 표를 끊고 나서야 병원에 가도 낫지 않던 증상이 차츰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는지, 조계사에 차려진 강정생명평화캠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 힘든 투쟁의 현장임에도 또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그곳, 강정마을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공사를 강행하는 국가와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에 대한 분노, 혹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지킴이들에 대한 미안함과는 또 다른 무엇이다. 강정마을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강정을 앓고 있다.

강정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경찰들과 마주하게 되지만 그게 전부 아니다. 집회를 금지하면 일인시위를 하고, 종교행사를 하고, 촛불문화제를 한다. 하루를 신명나는 마약댄스 4종으로 마무리한다. 지킴이들과 어울려 중덕 삼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달팽이 카페에서 탁 트인 제주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일요일엔 강정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한다. 그렇게 강정에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고,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고, 또 그 기운으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기운이야말로 평화가 아닐까. 우리는 강정마을에서 치열하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 문화행사 등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가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정마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벤자민은 프랑스에서, 앤지 켈터는 영국에서 집회를 기획했고, 미국, 독일 등에서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강정마을을 응원하는 활동들이 이어

지고 있다. 평화의 문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국제연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구럼비 발파와 진행되는 공사로 설사 구럼비가 모두 부서져 시멘트와 뒤섞인다고 해도 이대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군사기지가 들어와도 강정마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것이고, 군사기지에 저항하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노래에 맞춰 '강정막춤'을 선보이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출처: 오마이뉴스)

아이쿱 생협만평

이동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냄새로 검사?



차라리
이런 게
더 현실적!

으아~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냄새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송명훈 (리셋 KBS뉴스 기자)

사찰문건 세상에 공개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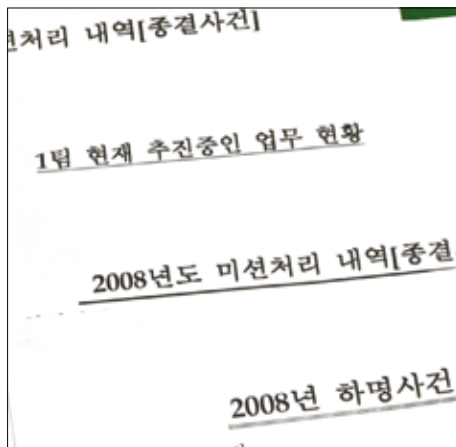
2012년 3월27일 오후 대법원 민원실.

“이 자료는 지금 대법관실에 올라가 있는데, 글썄요. 찾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두 시간 뒤쯤 다시 오시죠”

다시 초조해졌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취재한지 한 달. 재판 기록에 첨부된 CD를 찾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지만 민원실 직원의 말을 듣고 나니 힘이 쭉 빠졌다. 불길한 예감을 애써 억누르며 법원 앞 찻집에서 시간을 때웠다.

“이거 맞나 확인해 보세요. 복사해갈 공 CD는 가져 오셨나요?”

증거 제 133호, 바로 그 CD였다.



지난 3월말 KBS 새 노조의 리셋KBS 뉴스를 통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건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2008년 하명사건처리부 등 사찰문건을 통해 민간인과 공기업 임원 그리고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사찰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9부 능선은 넘었다. 하지만 CD안에 어떤 문서가 들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잔걸음으로 민원실을 나왔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 마음속으로 수십 번은 ‘제발’을 외쳤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부팅시간, 다시 한 번 ‘제발’을 되뇌며 노트북에 CD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2,600여건의 사찰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다.

민간인 사찰 피해자는 김종익씨 뿐?

2008년 9월.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한마음의 대표였던 김종익씨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몇 달 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무심코 올린 동영상 한편 때문이었다. 일명 ‘쥐코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이 영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 등을 비판한 것으로 김씨가 만든 것도 아니었다. 당시 2백만 건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터넷에 널리 퍼져있던 것을 블로그에 올려뒀을 뿐이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前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 김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무심코 올려둔 동영상 하나 때문에 뒷조사를 당하고 회사를 빼앗겼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은 영장도 없이 KB한마음의 사무실을 수색했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또 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민은행도 찾아가 협박했다. 사찰팀은 김씨를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이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후원자로 낙인찍고 철저히 무너뜨렸다. 김종익씨는 회사와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회사지분까지 모두 처분했다. 평범한 시민이던 김씨는 이렇게 회사를 빼앗기고 실업자가 됐다. 하지만 김씨의 고통은 철저히 은폐됐다.

문혀 버렸던 이 사건은 2010년 6월 민주당 의원의 폭로와 MBC PD수첩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군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여론에 밀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수사는 형식적이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는 김종익씨 한 명으로 결론 짓고 청와대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7명만을 기소했고, 다시 사건은 잊혀졌다.

해적방송 ‘리셋 KBS뉴스’, 진실을 깨다

2012년 3월초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기자들은 ‘리셋 KBS 뉴스팀’을 꾸렸다. 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고백이 막 터져 나온 뒤라 언론관심은 온통 장진수의 입에 쏠려 있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사건이 전개됐다. 총리실이 권한을 남용해 민간인을 뒷조사한 불법 사찰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해 증거를 인멸한 사건으로 나뉜다.

장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어떻게 증거를 없앴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그 지시를 청와대에서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윗선은 없다’던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이었다.

장 씨의 등장으로 잊혀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다시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정작 불법 사찰의 규모와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KBS 새 노조가 인터넷을 통해 전하고 있는 파업뉴스 채널 '리셋 KBS 9 뉴스'. 파업기자들이 만든 '해적방송'이 민간인 사찰 문건을 폭로하는 특종을 해냈다. 리셋KBS 뉴스팀은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를 통해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모두 수상했다.

과연 검찰이 발표한 대로 민간인 사찰 피해자는 김종익씨 한 사람 뿐이었을까. 취재진은 너무도 당연한 이 의문을 붙들고, 증거 인멸과 함께 사라져버린 불법 사찰 그 자체를 주목했다. 총리실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없앴다. 다급했고 숨겨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어딘가에 사찰의 실체를 밝혀줄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원점에서부터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장진수씨 외에 다른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다문 상태에서 총리실 사찰 팀의 행적을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실마리는 판결문에 있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다가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문건을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냈다면 이를 통해 불법 사찰의 전모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 그 즉시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구했다.

기대했던 대로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는 증거기록에도 문서로 첨부돼



리셋 KBS뉴스팀은 사찰문건을 찾기 위해 150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재판기록을 분석했다.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검찰이 내용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해 구체적인 사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제목만 남아있는 빈껍데기의 문건이었다.

취재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검찰은 왜 수많은 증거기록 가운데 유독 하명사건 처리부만 내용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했을까. 당연히 세상에 알리기 곤란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15,000페이지에 이르는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한장 한장 넘겨 가며 분석했다. 다행히 성과가 있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기록을 제출하면서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등의 문서 파일이 담긴 CD도 함께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기대는 반반이었다. 이 CD에도 빈껍데기의 문서만 담겨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에 증거 열람복사 신청을 해 직접 CD를 확인해야 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먼저 온전한 형태의 ‘하명사건 처리부’가 있었다.

의심했던 대로 여기에는 김종익씨 외에 다른 민간인과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사찰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명의 주체는 청와대(Blue House)를 뜻하는 ‘BH’로 표기돼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KBS와 YTN 등 언론기관에 대한 사찰문건 등을 포함해 불법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총리실 사찰 팀은 이미 검찰 수사에 앞서 컴퓨터 10대의 내용을 모두 삭제했고, 종이문서 4만5천 장을 파쇄 해버렸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한 수사관이 usb 메모리를 검찰에 압수당했고, 그 안에서 일부 사찰 문건이 드러난 것이다.

부조리한 권력과 부역하는 검찰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초법적인 권한으로 국민을 감시했다. 이것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다. 해산됐던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수사한 검찰은 추가 피해자는 물론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실상 졸속 수사였다. 뒤늦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지만 검찰의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만들어진 때는 광우병 파동에 이은 촛불집회가 확산된 뒤였다. 당시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정부의 굴욕적인 대미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촛불의 촉발제는 광우병 파동이었지만 촛불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소통 부재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촛불의 참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힘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태인식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촛불집회에 대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한, 오너의 지시와 복종에 길들여진, 그리고 효율과 성과만이 정의인 곳에서 살아온 사람의 비뚤어진 시대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야흐로 공포정치의 시작이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은 철저히 영포라인 인맥으로 꾸려졌다. ‘완장’을 찬 사찰 팀의 위세는 대단했다. 권력 유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은 모두가 사찰대상이었다. 민간인 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 심지어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비판한 여당 의원들까지 뒷조사를 했다. 김종익씨 사건이 폭로되기까지 약 2년 동안 총리실 사찰 팀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되자 검찰은 이미 드러난 것만 문제 삼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진실은 은폐됐다. 이것은 검찰의 부실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시작한 것은 2010년 7월5일이다. 여론에 떠밀리다 총리실이 수사의뢰를 하자 마지못해 시작한 수사였다. 사건의 성격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나흘 뒤인 7월9일에야 진행됐다. 검찰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총리실 사찰 팀은 대놓고 증거를 없앴다. 주말에 출근해 종이 문서를 파쇄기로 갈아 버리고, 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괴했다.

장진수 주무관은 청와대 인사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과 조율이 끝났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민망할 정도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 수뇌부는 눈과 귀를 닫았다. 그것으로 수사는 끝나는 듯 했지만 결국 은폐된 진실은 하나씩 다시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번에는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로 볼 때 특검과 국정조사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에 파업에 나섰다. 유례가 없는 장기 연대 파업이다. 여기에 국가 기간 통신망인 연합뉴스도 가세했다. 무엇이 언론인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했는가. 부끄러움이다. 왜곡 보도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레 겁먹고, 부딪히기 보다는 피해가기에 급급했던 지난 몇 년이 못 견디게 부끄러웠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치열하게 살지는 못했다.



KBS 새 노조 조합원들이 '공정방송 사수!'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KBS 새 노조의 파업구호는 '리셋 KBS, 국민만이 주인'이다.

한진중공업 김진숙씨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309일 동안 고공투쟁을 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해고사태 이후 22명이 죽었다. 서슬 퍼런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노동자들이 죽어가던 80년대의 일이 아니다. 2012년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총리실이 영장도 없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검찰이 멋대로 정권에 면죄부를 주어도 되는 나라. 백번 양보해도 언론의 책임이 크다. KBS 새노조가 해적 방송을 통해서라도 뉴스를 만드는 이유, 그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이다. KBS 새노조의 모토는 ‘리셋 KBS, 국민만이 주인’이다. 🙏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주의, 그 이후』를 읽고

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책 제목은 눈길을 끌지 못했다. 특히 부제 ‘승자독식 논리에서 상생의 인본주의로’는 많이 접해본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상생의 인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읽거나 접해보지 못한 것을 알았다.*

이 책은 필자가 프롤로그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로 이행을 담고 있는 미래의 메시지다. 이를 압축 요약하면 ‘상생의 인본주의’다. 현재 승자독식 구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생’이란 것이다. 이 상생이란 표현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이 아닌, 자본주의 현재의 상황을 넘을 수 있는 분명한 해법으로 상생을 의미한다.

* 서평이 갖는 무게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려 노력했으나 최근 상황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침탈 등으로 긴박해서 충분치 못했음을 먼저 밝혀둔다.

1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 부분에선 피터 드러커의 지식사회론에서 영감을 찾는다. 과거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는 생산수단으로 급격히 떠오르는 ‘지식’이란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생산수단의 직접적인 소유주체가 될 수 없었던 반면, 지식사회로 넘어오면서 ‘지식’이란 생산수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식사회로의 전환은 자본의 역주행과 역습에 직면하게 되지만 결국 그것조차 과정일 뿐이며 결국 지식사회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승자독식에 대한 유혹은 결국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일 뿐이며, 미국 금융자본주의 몰락의 예처럼 장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할 뿐이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윤리경영, 상생경영, 녹색경영, 사회 책임경영을 펼치는 이유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이윤의 한계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이 근본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으며, 때문에 서서히 개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전쟁 상태에 돌입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인 코스모스 상태에서 대혼전의 카오스 상태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추격 전략으로 지속할 것인가, 창조전략으로 재편할 것인가의 갈림 길에 놓여있다.

2부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핵심은 자본이 아닌 사람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재정립되고 있다. 페이스북 미국 본사 사무실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다. “우리는 기술회사인가?” 사람보다 기술, 인간보다 기계나 성과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였다면, 이제는 2010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있어왔다”로 전환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기계로부터 소외되었고 거대한 조직이 개인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가운데 개인의 삶이 극도로 황폐화 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사람이 주도적 위치를 되찾고 개인의 삶이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절대다수가 지식근로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역사상 최초의 신세대의

등장이란 것이다.

‘새로운 종’이라고 까지 평가되는 신세대는 기존 질서를 거부한다. 촛불소녀로 대표되는 신세대의 발랄함과 거침없는 자율성은 조직의 활력은 물론 경계를 쉽게 허물고 넘나든다. 기업 또한 이런 신세대와의 충돌이 아닌 상생을 통해 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4개의 기둥이라는 노동, 자본, 국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지식사회와 신세대의 출현으로 자본과 노동은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더 이상 주도적이지 않은 생산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자본과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더는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아쉽게도 조금 부족하고 단편적인 느낌이 든다.

3부 ‘인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은 탈자본주의 사회로 이행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안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강력한 요소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본주의다.

여기에선 ‘창조력’이란 개념이 등장한다.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데서 핵심개념으로 ‘주도적 생산요소’를 든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사회주의에서 노동이 그런 것처럼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 가운데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주도적 생산요소를 가진 자가 궁극적으로 지배 권력을 행사하고, 주도적 생산요소의 속성이 경제 주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행 법칙이 작용한다.

감성의 마력을 통해 상상력이 권력인, 자본에서 ‘창조력’으로 급격히 넘어간다는 것이다. 왜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인가 라는 질문에 창조력을 지닌 인간이야말로 낡은 껍질 속의 새로운 싹이라는 것이다. 창조력을 지닌 인간(신세대)이야말로 새로운 선진 계급이라는 것이다. 선진 계급은 그동안 영구파업이 불가능했던 노동 계급의 본원적 한계를 뛰어 넘는다.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은 계급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획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력 기반 경제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된 계급이란 사실이다. 이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

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는 점차 문화 예술을 닮아가듯 차이로부터 가치를 발생시킨다. 일과 놀이의 구분이 사라짐으로 인해 일에 대한 몰입과 새로운 창조 작업이 가능하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야 기업은 유지 될 수 있다. 예는 애플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4부 ‘상생의 생태계’는 승자독식은 결국 공멸의 덫이라는 것이다. 자연과 사회는 하나라는 진리를 지구온난화라는 자연의 채찍으로 매섭게 맞고 있다. 상생의 생태계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감성, 상상력의 융합으로서 창조력이 주도적 생산요소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상생의 인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에서 수평적 조직문화와 상생의 생태계 구축은 같은 정신 뿌리로 형성된 두 개의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생태계 또한 같은 맥락이다. 구성원 우선주의만이 선순환기업생태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한킴벌리 사례는 승자독식 생태계가 아니어도 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생의 생태계들이 모여 거대한 생태계로의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5부 ‘새로운 사회의 한복판으로’는 상생의 인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필연적 가능성이라 규정한다. 유목경제를 확보했던 신자유주의 경제는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초래했고 결국 전 세계적 실업증대와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세계화의 덫이다. 세계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목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정착경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직능조합이 등장한다. 직능조합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창조자들의 수평적 연합체이며 개방적 협력 시스템의 우월성을 잘 보여준다. 상생의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도약한다.

결국 이 책 『자본주의, 그 이후』는 상생의 인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본주의가 확실히 퇴장하고 상생의 인본주의 사회로 본격 진입했을 때 직능조합 기반의 개방적 협력 시스템이 빠르게 일반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논쟁이 되는 지점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책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에선 많이 공감이 되었다. 직능조합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부족하다보니 한 눈에 딱 들어오는 상이 그려지지 않는 면이 있어 아쉬웠다. 그럼에도 ‘상생의 인본주의’라는 화두를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눈앞만 보고 달려오던 내게 주변과 이후 너머를 생각하고 자극해준 책이다.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협동으로 만들어가는 공정식품 체인

유럽연합 의회에서 유럽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공동의 농업정책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의의 초점은 보다 더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식품체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식품공급체인을 준비하는 협동조합’이란 주제로 Euro Coop과 COGECA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캠프리 의장은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이 식품공급체인을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식품공급체인은 협동조합적 가치를 대변하는 조직이 될 것이며 공정성과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운영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유럽연합 의회의 주요 인사는 식품공급체인에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들을 접목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지지를 표하기도 하였다. “협동조합운동의 원칙들을 세웠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의 창시자들은 사업에 사회적 의식을 불어넣었고 이는 세상에 매우 큰 울림을 가져왔다. 이러한 원칙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타당하다. 중소규모의 사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속에서 협동조합의 성장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협동조합 진영 인사들이 해당 컨퍼런스에서 강조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도 협동조합적 특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입법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원칙에 근거한 협동조

합적 상향접근 사업방식으로 운영되는 농식품분야 협동조합의 독특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분야의 성장을 '제한'하는 위험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와 같은 논의들은 유럽 식품공급 분야가 협동조합이라는 단일한 법적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녹색당, 협동조합 지원에 나서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녹색당총회를 위해 76개국에서 모인 녹색당 대표단은 각자의 정부에 협동조합의 설립, 성장,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호주 녹색당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협동조합이 빈곤을 줄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ICA의 협동조합 원칙과 녹색당이 지닌 원칙들 간의 일치를 인식한 결과이다. 해당 결의안은 상당수 국가들의 의회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녹색당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지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을 대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세계협동조합의날은 물론 세계협동조합의해 기간 동안 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는 녹색당의 약속이 포함되어있기도 하다.

폴린 그린 ICA 회장은 녹색당 총회에 보낸 축하 편지를 통해 “올해 세계협동조합의해에 가치기반 기업 모델의 중요성과 이러한 기업 모델이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하루하루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업을 찾게 되고 성평등이 향상되며 기후 변화 및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길 바란다.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라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협동조합, 공정무역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5월12일 세계공정무역의날을 맞아 ICA는 공정무역 운동이 협동조합적 사업 모델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려내고 있다. 베트남의 Hop Tac 커피협동조합은 불안정한 가격으로 인해 커피산업계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Hop Tac 커피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교육 훈련과 후원을 수출 증대 기반으로 활용하였으며 공정무역 기금으로 지역공동체 내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뿐 아니라 10,000명의 농부가 국가 전체 코코아의 25%를 생산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CONACADO 협동조합, 자체 공장을 지어 임대료와 100km 넘게 떨어진 다른 공장으로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게 된 파라과이 Manduvia 설탕 협동조합들이 있다.

ICA 홍보국장 Nicola Kelly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협동조합이 공정무역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성공적인 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무역과 협동조합의 관계는 협동조합기업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지속가능한 주택 시장 구축을 위한 유럽의 노력

19세기 중반 독일 베를린의 Viktor Aimé Huber에 의해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주택협동조합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주택 시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 예로 폴란드 주택협동조합은 2009년 기준 국가 전체 주택 수의 27%를 차지하는 3천5백만 명의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코와 스웨덴에서는 17%, 노르웨이에서는 1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주택협동조합 및 주택공급자들은 지속가능한 주택 및 주변 환경의 질적 개선과 같은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들은

주택협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나 월세와 장기임대와 같은 사업 방식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스페인의 사례와, 은행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성장 방안에 대한 모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협동조합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Euricse 조사연구소 주관으로 협동조합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베니스에서 개최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증진’ 컨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출현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협동조합 성장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된 법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분야 및 새로운 분야 내 협동조합 성장의 기본 전제 조건은 협동조합에게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자유, 접근성,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협동조합에 불리한 정책들은 협동조합 기업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고서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협동의 유전학은 적응하고 변화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협동조합의 유용성이 탁월한 위기 극복 능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일단 5월 말에 발행된 후 논의를 더 진전시켜 협동조합 10년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2020 비전’에 담길 예정이다. ‘2020 비전’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ICA 총회에서 ‘세계협동조합의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ICA의 주요일정>

2012년 UN 국제협동조합의 해		
10월	8~11일	2012세계협동조합 정상회의(캐나다)
11월	25~30일	ICA-AP지역총회, 고베(일본)
미정		ICA미주지역총회
미정		ICA아프리카지역총회 및 제 10회 ICA아프리카각료회의, 키갈리(르완다)
10월	31일~11월 2일	제3회 ICA엑스포, 맨체스터(영국)

(출처: ICA Digest 73호 및 ICA eDigest 창간호(5월)) 

생협평론 2010 겨울 (창간호)

발간사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병호 (iCOOP협동조합연구소장)

축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협

정태인 (경제평론가)

열린 생협 운동의 비전제시를 기대하며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

길잡이

iCOOP생협, 세상에 말 걸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창간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 (메이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 (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이슈

웅포금강에서 사라진 이름들

송기역 (르보작가)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 공정무역은 위태롭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아이쿱 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지구촌 협동조합 소식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김태연 (iCOOP생협개발부 무역팀장)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 : 경제 대안 운동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돌발논문

우리는 속고 있다, 속는 줄도 모르고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천안함언론검증위원)

서평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이선옥 (구로생협 문화위원, 르보작가)

길잡이

먹을거리만 다루라고요?

엄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 (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
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 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 (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이슈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분숙 (르브작가)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SSM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친서민 대 친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보도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평

『식품주식회사』

엄은희 (부산대학교 HK교수)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길잡이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 (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시스템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 (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규, 김아영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에너지 위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서평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오귀복 (아산YMCA생협 이사)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터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항식 (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회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이슈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홍광석 (국제협동조합연맹 분과기구담당)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제2, 제3의 용산, 명동3구역을 말한다

유채림 (소설가/ 홍대철거현장 '두리반' 주인)

서평

『복지국가 스웨덴-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허인영 (아이쿱구로생협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2011 윤리적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류지형 (교사)

위대한 생산

김시은 (주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유형석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길잡이

협동조합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 (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 (모심과 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 (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좌담회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해정, 정경섭, 김아영

이슈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서분숙 (르뽀작가)

돌발논문

지속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노동에서

하중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서평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차형석 (시사인 기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길잡이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말해야 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 (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번역: 김연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杉本貴志 (関西大学商学部教授)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박범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박홍수 (공공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세 가지 물음 - 정리하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연경 (르뽀작가)

돌발논문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고재열 (시사IN 문화팀장)

서평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조영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윤리적 소비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구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일부터
아동학대와 노동착취가 없는 공정무역 물품을 구입하고,
겨울철 농가소득을 돕는 친환경 우리밀을 찾는 일까지.
소비활동에서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나와 우리 이웃,
지구환경까지 생각하는 가치있는 소비입니다.

소비만 잘 해도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비만 잘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웃는 세상이 됩니다.

윤리적 소비 아이쿱(iCOOP)생협에서 시작됩니다.

윤리적 소비란?

나와 우리 이웃, 지구환경을 위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비입니다.
“나”를 위해 소비를 하지만 조금 더 이웃과 동물, 지구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치있는 소비를 선택하자는 아이쿱(iCOOP)생협이 제안하는 새로운 소비입니다.



상담문의 : 1577-0178
가입문의 : 1577-0014

생산기반을 지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수매선수금 운동

조합원이 이용할 물품대금을 물품이용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매선수금 운동은 본인이 이용할 물품대금을 미리 냄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이용할 물품의 생산, 수매에 필요한 자금(영농, 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수매선수금 운동을 하는 이유

1.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위해서는 생협의 계약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확보를 위해 수매자금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2. 생협과 계약생산지 간의 생산계약과 계약금 우선 지급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약 100~130억 원이, 가을철 주잡곡류의 수매를 위해서는 약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3. iCOOP생협 조합원 중 1만 명의 조합원이 내는 수매선수금 운동을 통해 생산자와의 생산계약과 영농지원에 필요한 자금 및 가을철 수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참여방법

1. 100만원 정액 참여방식
 - ① 참여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② 1회 100만원씩 횟수 제한없이 참여합니다.
2. 월 이용금액 참여방식
 - ① 매월 이용금액을 선수금으로 납입(조합원 월 평균 이용금액: 약 20~30만 원)
 - ② 최소금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약정하여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할 때 자본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1. 온라인 : 장보기 로그인 후 참여신청
2. 매장 : 매장에 비치된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참여신청

문의: 1577-0014 인터넷 : <http://www.icoop.or.kr/coopmall>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노동자, 도시 빈민, 지역 주민 등이 스스로가 필요하여 생협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주적으로 운영해 온 역사를 정리하는 시도 중 하나이다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2)
푸른나무 | 352쪽 | 신국판 | 15,000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1879년 일본 최초의 생협 교리츠쇼사로부터 일본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한 권으로 읽다

사이토 요시아키 저, 다나카 히로시 옮김 (2012)
그물코 | 220쪽 | 신국판 | 12,000원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큰 오늘날, 협동조합이 이상으로 삼아온 '서로 함께 돕는', '호혜'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협동의 사회시스템으로서 지금의 협동조합운동을 더욱 널리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2012)
그물코 | 184쪽 | 신국판 | 10,000원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CO-OPERATIVES JOURNAL vol.7 Summer 2012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Co-operatives in the World:

Housing Co-op's concept, history and implications

GI, Nochae

Tolerant co-operatives going together with communities _ Social cooperatives

KIM, Sinyang

Workers Co-op's history, vision and tasks in South Korea

KIM, Seongo

Consumer Co-op's task and Suggestion

CHEON, Hyeongsu

Credit Co-op and Cooperative bank

KIM, Changin

Producer Co-op's formation and evolution

CHANG, Jongik

Special Column: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R.C.Richardson

Round-table :

New Cooperatives in South Korea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